



# NABO 추계&세제 이슈

## NABO Cost Estimates & Tax Issues

### CONTENTS

- 추계&세제 분석 | 2022년도 총수입 전망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 추계&세제 최근이슈 |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소개: 호주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캐나다편 -





## Contents

<b>추계&amp;세제 트렌드</b>	<b>3</b>
2021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4
2021년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13
<b>추계&amp;세제 분석</b>	<b>19</b>
2022년도 총수입 전망	20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29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38
<b>추계&amp;세제 최근이슈</b>	<b>47</b>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	48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소개: 호주	61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 캐나다편 -	66
<b>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b>	<b>81</b>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계&세제 이슈

# 추계&세제 트렌드

2021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년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 2021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sup>1)</sup>

문 지 은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45)

## 2021년 3분기 가결 법률 155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62건\*(전체의 4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8건,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56건
- 수입법률 1건 및 지출법률 19건 등 20건의 추계 결과 제시

## 수입법률 1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918억원 수입 감소 예상

- 국가: 연평균 918억원 수입 감소 예상

## 지출법률 19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6,029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국가: 연평균 3,277억원,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2,752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수입과 지출 동시유발법률 2건 포함

\*\* 추계금액은 2022~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금액으로 제시

## 1. 2021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법률 현황

2021년 3분기 국회는 155건의 법률을 가결하였으며,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40.0%인 62건

- 이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건의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1건,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19건<sup>1)</sup>

1)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42건은 제외하였으며, 미추계건 중 법안 가결 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령 개정 등이 완료된 건은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2022년 발간)에서 추계규모 제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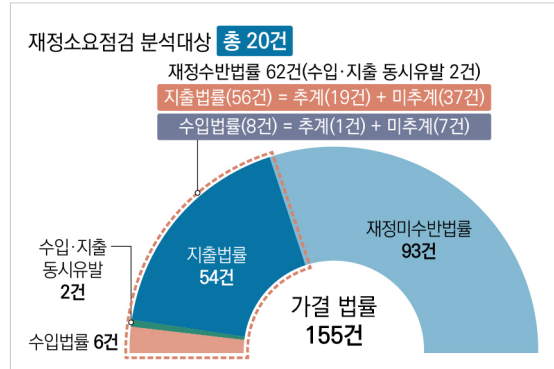
표 1 2021년 3분기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단위: 건)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추계) <sup>1)</sup>		
	소계	수입법률	지출법률
155	62 <sup>2)</sup> (20)	8 (1)	5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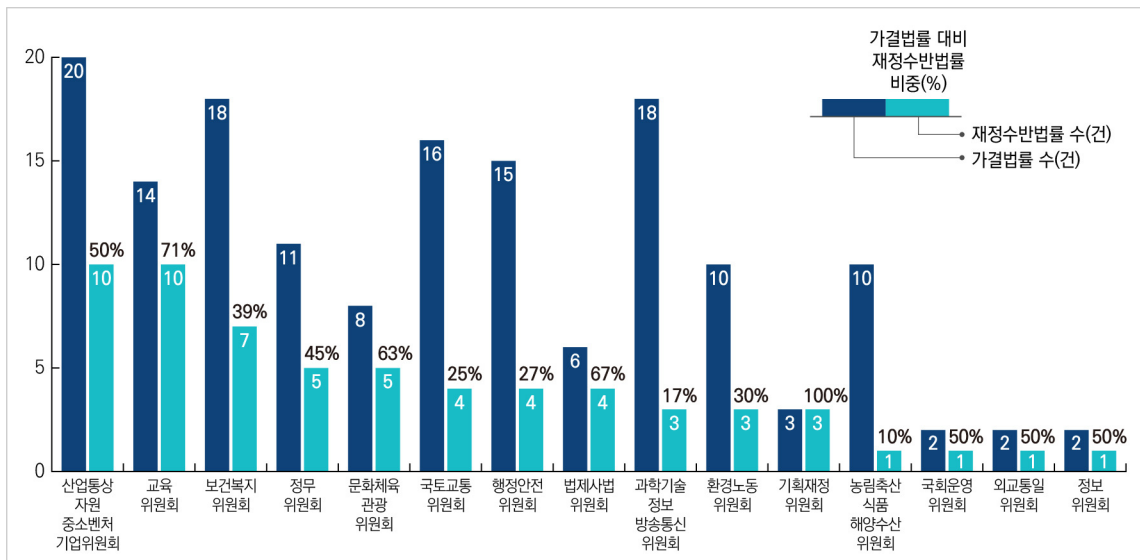
주: 1) ( )안은 추계가 곤란하거나 추계액이 미미한 42건을 제외하고 재정소요점검을 시행한 법률 수  
 2) 수입·지출 동시유발 법률 2건 포함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그림 1 2021년 3분기 재정소요점검 대상 법률 현황



- (위원회별) 2021년 3분기 재정수반법률이 가장 많이 가결된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교육위원회(각 10건), 보건복지위원회(7건), 정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각 5건) 순
- ▶ 가결 법률 대비 재정수반법률 비중이 높은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100.0%), 교육위원회(71.4%), 법제사법위원회(66.7%) 순

그림 2 2021년 3분기 위원회별 가결 법률과 재정수반법률 현황 및 가결 법률 대비 재정수반법률 비중



## 2. 2021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 가. 수입 부문

2021년 3분기에 가결된 수입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1건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5년간 연평균 918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표 2 2021년 3분기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별		수입합계 (연평균 <sup>1)</sup> )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입 유형별	조세수입	△918	-	△918 (100.0%)
	국세외수입	-	-	-
합계		△918 (100.0%)	-	△918 (100.0%)

주: 1)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 )안은 전체 중 각각의 비중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유형별) 수입변동은 국세수입이 연평균 91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조세수입(국세):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연평균 918억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 수입이 연평균 91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위원회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 1건에 따른 재정변동을 추계

표 3 2021년 3분기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위원회	소계 (A+B, 건)	추계		미추계
		건수 (A, 건)	수입변동 (연평균 <sup>1)</sup> 억원)	건수 (B, 건)
기획재정위원회	3	1	△918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	-	2
국토교통위원회	3	-	-	3
합 계	8	1	△918	7

주: 1)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미추계 건수는 모든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건을 의미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결과(위원회별)



## 나. 지출 부문

2021년 3분기에 가결된 지출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19건 법률 시행 시 2022년부터 5년간 연평균 6,029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 2021년 3분기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별		지출합계 (연평균 <sup>1)</sup>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출 유형별	의무지출	-	-	-
	재량지출	3,277	2,752	6,029
합계		3,277 (54.4%)	2,752 (45.6%)	6,029 (100.0%)

주: 1)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 )안은 전체 중 각각의 비중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출유형별) 재량지출이 연평균 6,02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대상 없음
  - ▶ 재량지출: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 법으로 정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 19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6,029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 부담은 연평균 3,277억원(54.4%),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연평균 2,752억원(45.6%) 지출 증가 예상<sup>2)</sup>
  - ▶ 국가 재정부담 중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등 19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3,277억원 지출 증가 예상
  -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중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을 각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범위에 추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 4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2,752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위원회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률에 따른 재정소요가 연평균 5,488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위원회(연평균 193억원), 정무위원회(연평균 138억원) 순으로 지출에 영향
  -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추가(「도로교통법」, 연평균 5,488억원<sup>3)</sup>)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4건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합산한 추계액

- ▶ 교육위원회 소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 3건, 연평균 193억원)
- ▶ 정부위원회 소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외 3건, 연평균 138억원)

표 5 2021년 3분기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위원회	소계 (A+B, 건)	추계		미추계
		건수 (A, 건)	추가재정소요 (연평균 <sup>1)</sup> 억원)	건수 (B, 건)
행정안전위원회	4	1	5,488 <sup>2)</sup>	3
교육위원회	10	4	193	6
정부위원회	5	4	138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	1	8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2	57	3
법제사법위원회	4	2	23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1	13	-
보건복지위원회	7	1	13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	2	11	8
국토교통위원회	1	1	8	-
국회운영위원회	1	-	-	1
외교통일위원회	1	-	-	1
환경노동위원회	3	-	-	3
정보위원회	1	-	-	1
합 계	56	19	6,029	37

주: 1)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미추계 건수는 모든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것을 의미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결과(위원회별)

### 3. 2021년 3분기 가결 재정수반법률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수입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1. 8.31. 의결)

-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기본공제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연평균 918억원의 국세 감소 예상(2021. 9.14. 시행)
  - ▶ 추계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의 1인당 결정세액에 납세인원을 곱하여 산정
  - ▶ 1인당 결정세액은 2019년 실적 및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지역별·과표별 1세대 1주택자의 세수효과를 추정

- ▶ 납세인원은 2019~2020년 과세실적, 공시가격 및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과표별 과세인원을 추정

**표 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액 상향	△773	△841	△915	△992	△1,070	△4,591	△918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주요 사례: 지출법률]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1. 9.28. 의결)

-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을 각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범위에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보호구역을 설치·유지관리함에 따라 연평균 5,488억원 지출 증가 예상(2022. 4.20. 시행)
  - ▶ 추계대상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노인보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에 1개소씩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

**표 7**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범위의 확대	국비	2,333	2,455	2,582	2,714	2,850	12,934	2,587
	지방비	2,333	2,455	2,582	2,714	2,850	12,934	2,587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범위의 확대	국비	142	150	157	165	173	787	157
	지방비	142	150	157	165	173	787	157
합계	국비	2,475	2,605	2,739	2,879	3,023	13,721	2,744
	지방비	2,475	2,605	2,739	2,879	3,023	13,721	2,744
	합계	4,950	5,210	5,478	5,758	6,046	27,442	5,488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안, 2021. 7.1. 의결)

-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연평균 152억원 지출 증가 예상(2022. 7.21. 시행)
  - ▶ 추계대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과 종합발전계획 수립비용을 합산하여 추정
  - ▶ 국가교육위원회 재정소요는 현행 유사 위원회 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국가교육회의’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추정

**표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비용	146	145	149	154	158	752	150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10	-	-	-	-	10	2
합 계	156	145	149	154	158	762	152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2021. 7.23. 의결)

- 참전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생계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연평균 134억원 지출 증가 예상(2022. 2.18. 시행)
  - ▶ 추계대상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월 22~33.6만원)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

**표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156	144	134	124	115	672	134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7.23. 의결)

-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연평균 85억원 지출 증가 예상(2022. 2.11. 시행)

- ▶ 추계대상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확대에 따른 조사비용으로, 지역별 조사대상 인원 1인당 조사비용을 곱하여 산정
- ▶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4개 원전(고리·한울·월성·한빛) 주변지역으로 가정하고, “원전주변 주민”은 원전별 반경 5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가정

**표 10**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83	84	85	86	87	426	85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김영주의원 대표발의, 2021. 8.31. 의결)

-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및 권리보장과 예술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연평균 56억원 지출 증가 예상(2022. 9.25. 시행)
  - ▶ 추계 대상은 예술인 권리영향평가 시행비용, 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을 합산하여 추산
  - ▶ 예술인 권리영향평가 및 실태조사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산하며, 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 24명의 인력을 증원할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

**표 11**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실시	5	5	5	5	5	27	5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2	-	2	-	2	6	1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운영	48	48	49	51	52	248	50
합계	55	53	57	56	60	281	56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2021년도 3분기 재정수반법을 주요 재정수반요인 및 추계 현황

(단위: 억원)

수입 지출	의안 번호	의안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2022~2026년	
			연평균	합계
수입	21122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9억원 → 11억원으로 상향	△918	△4,591
	21126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을 각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범위에 추가	5,488	27,442
지출	211124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152	762
	211168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 지급	134	672
	210728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방사선으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확대 실시	85	426
	2100043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의의원 대표발의)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56	281
	210772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의의원 대표발의) - 원격교육통계조사 실시	35	176
	21061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의원 대표발의) - 고지절차,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 등 원격영상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	77
	2112219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3	67
211169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희농지 조사	13	63	

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2. 2022~2026년 동안 연평균 10억원 이상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법률만 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1년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김문경 ·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4, 4652)

## 1. 총수입<sup>1)</sup>

2021년 3분기 누적 총수입은 442.4조원으로 주요 국세수입 및 세외기금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0조원(24.8%) 증가

- (국세수입) 2021년 3분기 누적 국세수입은 274.5조원으로 전년 동기(214.7조원) 대비 59.8조원 (27.9%) 증가
  - ▶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증가
  - ▶ 2021년 3분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추경예산 대비 87.3%로 전년 동기 대비 12.1%p 높은 수준
- (국세외수입) 2021년 3분기 누적 국세외수입은 167.8조원으로 전년 동기(139.7조원) 대비 28.1조원(20.1%) 증가
  - ▶ 국민연금기금(+16.5조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성 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18.5조원), 사회보험 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증가(+3.2조원) 등에 주로 기인
  - ▶ 2021년 3분기 국세외수입 진도율은 추경예산 대비 83.8%로 전년 동기 대비 11.5%p 높은 수준

표 1 2021년 3분기 누적 총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총수입 실적 누계				진도율		'20 결산 (C)	'21 예산 (D)
	'20.3분기 (A)	'21.3분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3분기 <sup>1)</sup> (A/C)	'21.3분기 (B/D)		
총수입	354.4	442.4	88.0	24.8	74.0	86.0	478.8	514.6
1. 국세수입	214.7	274.5	59.8	27.9	75.2	87.3	285.5	314.3
2. 국세외수입	139.7	167.8	28.1	20.1	72.3	83.8	193.1	200.3
- 세외수입	19.6	22.2	2.6	13.3	72.6	75.8	26.9	29.3
- 기금수입	120.1	145.6	25.5	21.2	72.2	85.1	166.2	171.0

주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주 1) 결산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예산수입(국세수입 및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된다. 다만, 여기서는 수입의 성격(국세인지 아닌지)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을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세외수입은 예산수입 중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한 것으로 표기한다.

## 2. 국세수입

### 가. 개관

2021년 3분기 누적 국세수입은 274.5조원으로 전년 동기(214.7조원) 대비 59.8조원(27.9%) 증가하였으며, 진도율은 87.3%로 전년 동기(결산 기준 75.2%) 대비 12.1%p 높은 수준

- 3분기 국세수입은 납부유예 등에 따른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세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실적 호조시현
  - ▶ 법인 실적 개선, 수입실적 호조 및 민간소비 회복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1조원, 8.8조원 증가
  - ▶ 부동산 가격상승 및 세율인상 효과 반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전년 동기 대비 11.0조원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21.8조원 증가
- 3분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87.3%로 전년 동기(75.2%) 대비 12.1%p 높은 수준

표 2 2021년 3분기 국세수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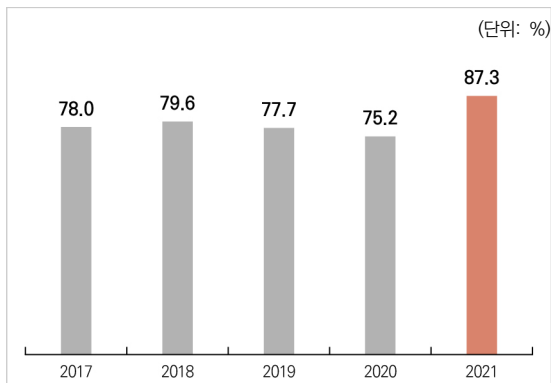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3분기 누계				진도율		'20 결산 (C)	'21 예산 (D)
	'20.09 (A)	'21.09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3분기 (A/C)	'21.3분기 (B/D)		
국세수입	214.7	274.5	59.8	27.9	75.2	87.3	285.5	314.3
○ 소득세	65.1	86.9	21.8	33.5	69.9	87.3	93.1	99.5
- 종합소득세	7.4	11.9	4.5	61.5	45.8	72.2	16.1	16.5
- 양도소득세	17.5	28.5	11.0	62.9	74.1	112.1	23.7	25.5
- 근로소득세	30.2	35.0	4.8	15.8	73.9	80.5	40.9	43.5
○ 법인세	50.0	65.2	15.1	30.2	90.1	99.4	55.5	65.5
○ 상속·증여세	7.1	11.9	4.8	67.1	68.5	99.6	10.4	11.9
○ 부가가치세	47.7	56.5	8.8	18.5	73.6	81.5	64.9	69.3
○ 증권거래세	6.1	8.1	2.0	32.7	69.9	98.1	8.8	8.3
○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3.0	1.6	14.4	81.7	83.0	13.9	15.7
○ 관세	5.0	6.4	1.4	28.0	70.6	76.4	7.1	8.3
○ 기타	22.3	26.5	4.3	19.1	69.7	74.3	31.9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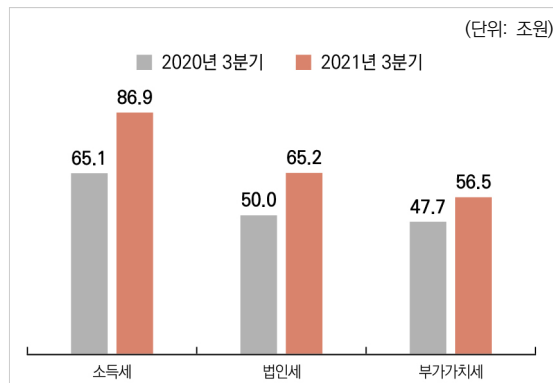
주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최근 5년간 3분기 국세수입 진도율 추이



**그림 2** 2021년 3분기 국세수입 실적



주: 2017~2020년은 실적 대비 진도율, 2021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세목별 증감원인

**소득세(3분기 누적 86.9조원)는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2020년 세정지원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조원(33.5%) 증가**

- 근로소득세는 35.0조원으로, 취업자 수 및 명목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조원(15.8%) 증가
  - ▶ 상용근로자(월평균, 만명): ('19.12~'20.8) 1,453, ('20.12~'21.8) 1,476 (+1.5%)
  - ▶ 명목임금(월평균, 천원): ('19.12~'20.8) 3,528, ('20.12~'21.8) 3,680 (+4.3%)
- 양도소득세는 28.5조원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및 2021.6.1. 이후 양도분에 대한 세율인상 등 제도변화<sup>2)</sup>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1.0조원(62.9%) 증가
  - ▶ 부동산매매량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누적, %): 주택 (5월) △5.4 (6월) △13.1, (9월) △14.4  
 토지 (5월) 6.3, (6월) 1.7, (9월) △1.7
  - ▶ 부동산가격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주택<sup>3)</sup> (5월) 7.8 (6월) 8.6 (8월) 9.3, (9월) 9.9  
 토지 (5월) 3.9, (6월) 4.0 (8월) 4.0, (9월) 4.1
- 종합소득세는 11.9조원으로, 2020년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실시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기저효과 및 이월세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조원(61.5%) 증가

2) 2021.6.1.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10%p 인상하고, 2년 이내 단기양도시 양도세율을 인상함(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

3) 주택(수도권): (5월) 8.7 (6월) 9.8 (8월) 11.1, (9월) 12.0

법인세(3분기 누적 65.2조원)는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실적호조 및 법인의 중간예납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1조원(30.2%) 증가

-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기준): ('19) 56.3, ('20) 67.5 (+19.8%)  
( '20.상반기) 29.6, ('21.상반기) 50.1 (+69.1%)
- 3분기 법인세 진도율은 99.4%로 전년 동기(90.1%) 대비 9.3%p 높은 수준

부가가치세(56.5조원)는 수입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조원(18.5%) 증가

- 통관수입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 ('21.1분기) 12.3, ('21.2분기) 37.5, ('21.3분기) 37.5
- 민간소비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 ('20.4분기) △5.6, ('21.1분기) 2.6, ('21.2분기) 6.4

증권거래세(8.1조원)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조원 증가하였으나, 최근 주식거래 감소에 따라 당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1.0조원) 대비 0.2조원 감소세 시현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거래금액(전년동기 대비, %): (6월) 14.0, (7월) 5.6, (8월) △7.0

### 3. 국세외수입

2021년 3분기 누적 국세외수입은 167.8조원으로 전년 동기(139.7조원) 대비 28.1조원 증가하였으며, 진도율은 83.8%로 전년 동기(72.3%) 대비 11.5%p 증가

- 3분기 국세외수입 증가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로 인한 기금 재산수입의 증가(18.2조원), 사회보장기여금 증가(3.2조원) 등 주로 기금수입의 증가(25.5조원)에서 기인
  - ▶ 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국민연금기금 16.5조원, 사학기금 1.2조원, 산재기금 0.6조원 등 증가
  - ▶ 그 외 일반회계 세외수입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증가(1분기 既1세입조치. 1.4조원), 특별회계 우체국예금 등의 자산운용수익 증가(1.1조원) 등

표 3 2021년 상반기 국세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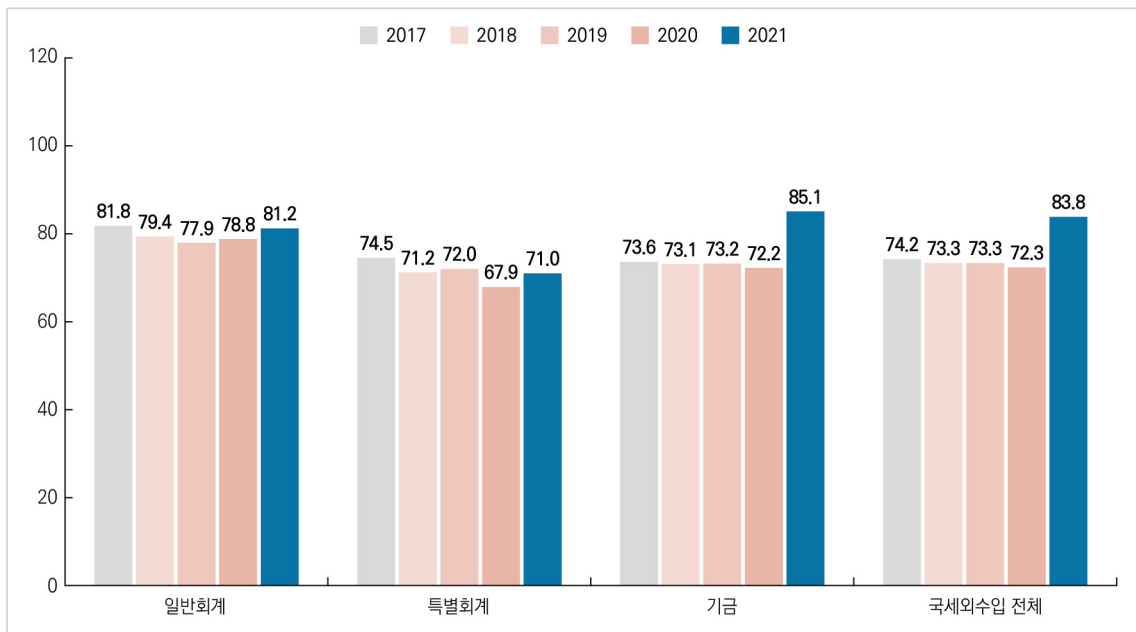
구분	3분기 누계				진도율		'20 실적 (C)	'21 예산 (D)
	'20.09 (A)	'21.09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3분기 (A/C)	'21.3분기 (B/D)		
국세외수입	139.7	167.8	28.1	20.1	72.3	83.8	193.1	200.3
○ 일반회계 세외수입	9.3	11.1	1.9	20.4	78.8	81.2	11.7	13.7
- 재산수입	4.4	6.2	1.8	40.9	98.0	100.9	4.5	6.1
- 경상이전수입	4.2	4.2	0.0	0.0	66.9	66.8	6.3	6.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5	0.5	0.0	0.0	65.7	60.6	0.7	0.8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sup>1)</sup>	-	-	-	-	-	-	-	-
- 기타 <sup>2)</sup>	0.2	0.2	0.0	0.0	70.1	51.7	0.2	0.4
○ 특별회계 세외수입	10.3	11.1	0.8	7.8	67.9	71.0	15.2	15.6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5	5.6	1.1	24.4	70.5	88.4	6.4	6.4
- 재산수입	0.1	0.2	0.0	0.0	22.5	44.0	0.6	0.4
- 경상이전수입	3.2	3.2	△0.1	△3.1	68.7	63.4	4.7	5.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	1.1	0.1	10.0	65.6	62.2	1.5	1.7
- 기타 <sup>2)</sup>	1.4	1.0	△0.4	△28.6	74.4	48.5	1.9	2.1
○ 기금수입	120.1	145.6	25.5	21.2	72.2	85.1	166.2	171.0
- 사회보장기여금	55.3	58.5	3.2	5.8	74.1	75.9	74.6	77.0
- 재산수입	20.0	38.4	18.4	92.0	70.4	143.2	28.4	26.8
- 경상이전수입	19.6	22.6	3.0	15.3	73.9	72.9	26.6	31.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4	3.7	0.3	8.8	44.5	47.1	7.6	7.9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0.4	20.9	0.5	2.5	74.9	79.8	27.3	26.2
- 기타 <sup>3)</sup>	1.4	1.5	0.1	7.1	77.3	73.2	1.8	2.1

주: 1) 유가증권매각대 등  
 2)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주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1.1조원으로 전년 동기(9.3조원) 대비 1.9조원(20.4%)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81.2%로 전년 동기(78.8%) 대비 2.4%p 상승
  - ▶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분(1.9조원)은 대부분 1분기 既세입 조치 된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증가분(1.4조원)
-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1.1조원으로 전년 동기(10.3조원) 대비 0.8조원(7.8%)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71.0%로 전년 동기(67.9%) 대비 3.1%p 상승
  - ▶ 우체금융예금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원 증가
- 기금수입은 재산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120.1조원) 대비 25.5조원(21.2%) 증가한 145.6조원이며, 진도율은 85.1%로 전년 동기(72.2%) 대비 12.9%p 상승

- ▶ 재산수입(전년 동기 대비 18.4조원 증가)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에 주로 기인
- ▶ 사회보장기여금은 전년 동기(55.3) 대비 3.2조원 증가한 58.5조원이며, 이 외에 경상이전수입(전년 동기 대비 3.0조원 증가),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전년 동기 대비 0.5조원 증가) 등의 항목도 전년 동기 대비 수납액이 증가

그림 3 최근 5년 간 회계별 상반기 국세외수입 진도율(%)



주: 2017~2020년은 실적 대비 진도율, 2021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추계&세제 이슈

# 추계&세제 분석

2022년도 총수입 전망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 2022년도 총수입 전망

박정환 · 문지은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5, 4645)

## 1.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편성 현황

정부는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을 2021년도 추경예산(514.6조원) 대비 34.2조원 증액한 548.8조원으로 편성

- 국세수입은 338.6조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증가를 반영하여 2021년도 추경예산(314.3조원) 대비 24.4조원(7.8%) 증액 편성
- 세외수입은 26.7조원으로,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감소 전망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추경예산(29.3조원) 대비 2.6조원(△8.9%) 감액
- 기금수입은 183.5조원으로, 가입자 수 증가, 임금 상승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증가를 반영하여 2021년도 계획(171.0조원) 대비 12.5조원(7.3%) 증액 편성
  - ▶ 기금수입 가운데 사회보장기여금은 80.1조원으로, 2021년도 추경예산(77.0조원) 대비 3.1조원(3.9%) 증가

표 1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

(단위: 조원, %)

구분	2020 실적	2021		2022 예산안	추경예산 대비(C-B)	
		본예산(A)	추경예산 <sup>1)</sup> (B)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478.8	482.6	514.6	548.8	34.2	6.7
국세수입	285.5	282.7	314.3 <sup>2)</sup>	338.6	24.4	7.8
국세외수입 <sup>3)</sup>	193.1	199.9	200.3	210.2	9.9	4.9
세외수입	26.9	28.9	29.3	26.7	△2.6	△8.9
기금수입	166.2	171.0	171.0	183.5	12.5	7.3
- 사회보장기여금 <sup>4)</sup>	74.6	77.0	77.0	80.1	3.1	3.9

주: 1) 추경예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 국세수입 추경예산은 경제회복세 반영(16.0조원), 자산시장 호조 감안(13.2조원) 및 대기업 총수 사망 등에 따른 우발세수 증가(2.3조원) 등으로 본예산 대비 31.5조원 증액

3) 이하의 분석에서 국세외수입은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을 제외한 개념으로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합계를 의미

4)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기여금 수입의 합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2021.9.

## 2. 2022년도 총수입 전망

### 가. 총수입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총수입 전망치는 552.1조원으로, 2021년도 전망 대비 25.7조원(4.9%) 증가하고 예산안보다 3.2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

- 국세수입은 340.9조원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가의 영향으로 2021년 대비 17.9조원 (5.5%) 증가하고, 2022년도 정부예산안 대비로는 2.3조원(0.7%) 높을 전망
  - ▶ 수출호조 및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의 증가와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가 전체적인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세정지원으로 2021년 수납되어야 할 국세 중 일부가 2022년으로 납부유예\*된 것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유예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납부유예로 '21년 납부예정이었던 세수 중 일부(정부 추산 6.2조 원)가 '22년 징수될 전망
- 국세외수입은 211.1조원으로, 기금운용수익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년보다는 7.8조원 (3.8%)증가하고 2022년도 정부예산안 대비로는 1.0조원(0.5%) 높을 전망
  - ▶ 경기회복에 따라 기금운용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월액 상승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등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수입도 증가할 전망

표 2 2022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1 NABO 전망 (A)	2022					
		예산안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C-A)		예산안 대비(C-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526.4	548.8	552.1	25.7	4.9	3.2	0.6
국세수입	323.0	338.6	340.9	17.9	5.5	2.3	0.7
국세외수입	203.3	210.2	211.1	7.8	3.8	1.0	0.5
세외수입	30.4	26.7	27.3	△3.1	△10.3	0.6	2.1
기금수입	173.0	183.5	183.9	10.9	6.3	0.4	0.2
- 사회보장기여금	75.7	80.1	80.1	4.4	5.9	0.0	0.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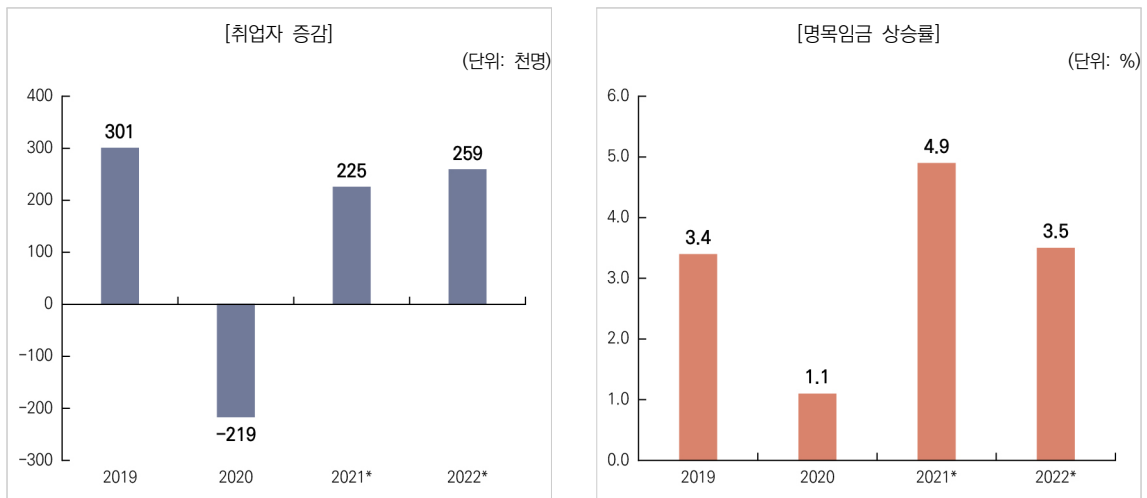
1) 정부, 「추석민생안정대책」, 2021.8.

## 나. 국세수입

2022년도 국세수입은 340.9조원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실적 개선 및 민간소비 증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전망(323.0조원) 대비 17.9조원(5.5%) 증가할 전망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체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세목이 경제지표의 개선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소득세는 103.9조원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증가를 양도소득세 감소가 상쇄함에 따라 2021년 대비 2.8조원(2.7%) 증가에 그칠 전망
    - ▶ 경기회복으로 인한 취업자수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2021년 대비 3.5조원(7.9%) 증가할 전망
    - ▶ 2022년부터 반영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효과\*와 2021년에 이월된 납부유예분 징수의 영향으로 종합소득세는 2021년 대비 5.0조원(32.6%) 증가할 전망
- \* 2020년 12월 개정으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 3%p 인상(42% → 45%)
- ▶ 반면, 양도소득세는 금리인상과 2021년 6월부터 인상된 양도소득세율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1년 대비 6.5조원(△24.1%) 감소할 전망

그림 1 취업자 증감 및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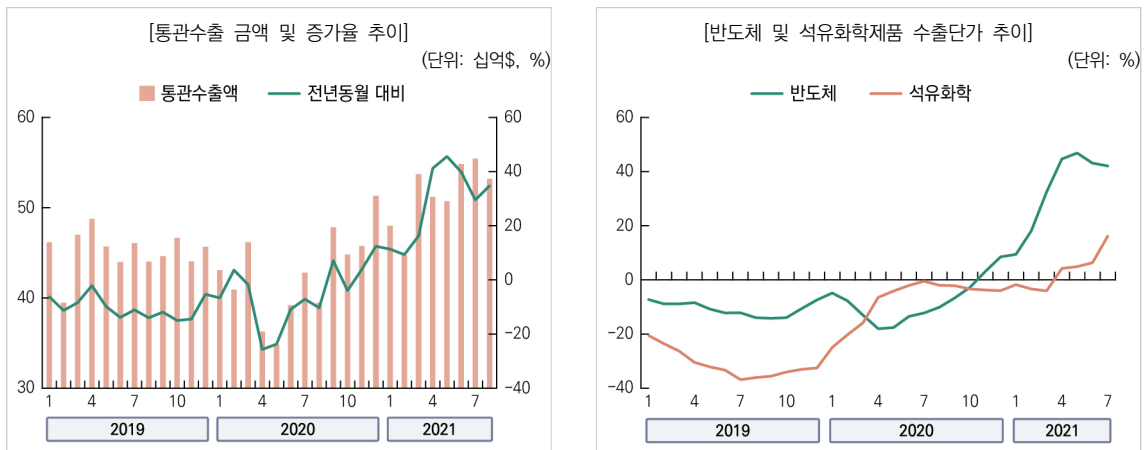
주: 2021년 및 2022년은 전망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1.9.



- 법인세는 77.2조원으로,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한 법인영업실적 호조로 2021년 대비 6.7조원(9.5%) 증가할 전망
  - ▶ 2022년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2021년 법인의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및 순이익에 있어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 유가증권 시장 세전순이익(조원): ('20년 상반기) 37.0 ('21년 상반기) 96.8
    - 외감법인 매출액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0년) △3.2 ('21년 2/4분기) 18.7
  - ▶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은 경기회복에 따른 주요국의 수요확대 및 세계교역량 회복으로 인한 수출증가에 주로 기인

그림 2 수출금액 및 수출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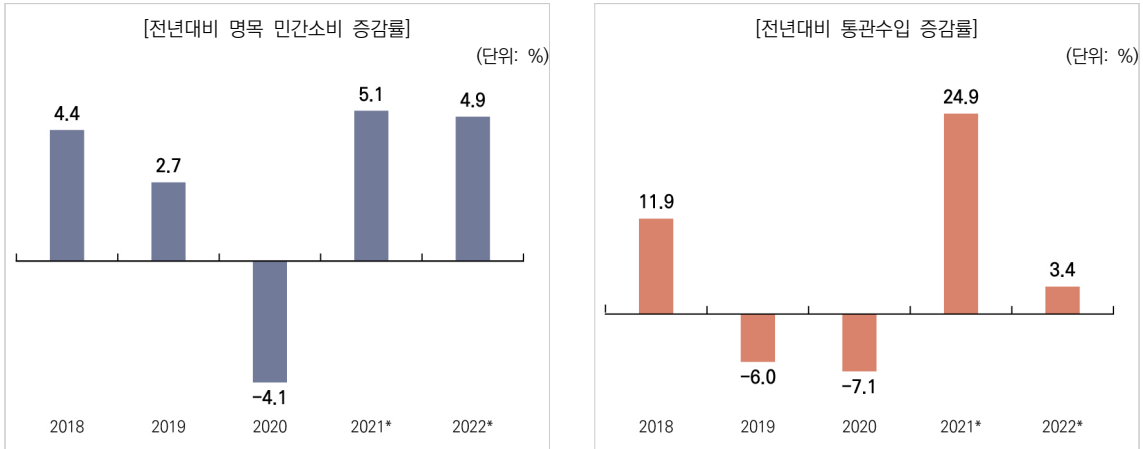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수출입물가조사」

- 부가가치세는 76.1조원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주요 세원인 민간소비와 통관수입액이 개선됨에 따라 2021년 대비 6.3조원(9.0%) 증가할 전망
  - ▶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과 백신접종률 상승으로 인한 대면소비 확대, 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 효과 등으로 2021년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통관수입은 대외경제 회복 및 경기개선에 따른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 유가 등을 중심으로 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21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단, 2022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21% →23.7%)<sup>2)</sup> 등으로 국세수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증가를 제한할 전망

2) 정부는 '21년 8월 현재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2년 23.7%, '23년 이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21.11.11.)되었으며, 기재위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2112230, 김영진 의원안)을 논의중이다.

**그림 3 명목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 증감률**



주: 2021년 및 2022년은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1.9.

- 개별소비세는 10.2조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경제회복에 따른 발전용 유류소비량 증가 전망 등에 따라 2021년 대비 0.6조원(6.6%) 증가할 전망<sup>3)</sup>
  - ▶ 2021년 시행되었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치 종료 등 제도적 요인도 일부 기인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6.7조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이동량 감소로 둔화되었던 수송용 연료(휘발유·경유) 사용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대비 0.4조원(2.3%) 증가할 전망
- 증권거래세는 7.7조원으로, 2021년 이례적으로 높았던 거래량의 반락효과 등으로 2021년 대비 0.5조원(△6.4%) 감소할 전망
- 종합부동산세는 6.7조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대비 0.7조원(12.3%) 증가할 전망
  - ▶ 공정시장가액비율: ('21년) 95% → ('22년 이후) 100%

3) 2021년 10월 27일 정부는 '21년 11월부터 '22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20% 인하하고, LNG 할당관세를 기존 2%에서 0%로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금번 전망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은 현재 전망된 세수보다 일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3 2022년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1 NABO 전망 (A)	2022					
		예산안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C-A)		예산안 대비(C-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323.0	338.6	340.9	17.9	5.5	2.3	0.7
일반회계	313.1	328.6	331.1	17.9	5.7	2.5	0.8
내국세	278.1	291.3	294.4	16.2	5.8	3.1	1.1
1. 소득세	101.2	105.0	103.9	2.8	2.7	△1.1	△1.0
2. 법인세	70.5	73.8	77.2	6.7	9.5	3.4	4.6
3. 상속증여세	13.3	13.1	13.5	0.2	1.7	0.4	2.9
4. 부가가치세	69.8	76.1	76.1	6.3	9.0	0.0	0.0
5. 개별소비세	9.6	10.2	10.2	0.6	6.6	△0.0	△0.2
6. 증권거래세	8.2	7.5	7.7	△0.5	△6.4	0.1	1.8
7. 인 지 세	1.0	0.9	1.0	0.0	1.2	0.0	5.2
8. 과년도수입	4.6	4.6	4.8	0.2	4.2	0.2	4.0
교통·에너지·환경세	16.3	16.8	16.7	0.4	2.3	△0.1	△0.5
관 세	7.6	8.5	7.9	0.3	3.4	△0.6	△7.1
교 육 세	5.2	5.5	5.5	0.3	6.3	0.0	0.9
종합부동산세	5.9	6.6	6.7	0.7	12.3	0.0	0.7
특별회계	9.9	10.1	9.9	△0.0	△0.3	△0.2	△2.0
주 세	3.2	3.4	3.3	0.1	3.5	△0.1	△2.4
농어촌특별세	6.7	6.7	6.6	△0.1	△2.1	△0.1	△1.8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다. 국세외수입

2022년도 국세외수입은 211.1조원으로, 2021년도 203.3조원 대비 7.8조원(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대부분(4.4조원)이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에서 발생

- 사회보장기여금 항목이 포함된 기금수입은 2021년 대비 10.9조원(6.3%) 증가한 183.9조원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2021년 대비 3.1조원(△10.2%) 감소한 27.3조원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자산시장 운용과 관련된 재산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에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이전수입은 일부 수입의 기금 이전으로 감소 예상
  - ▶ 경상이전수입은 10.1조원으로, 기후대응기금 신설로 환경개선특별회계 배출권매각대 수입이 기금으로 이전함에 따라 2021년 대비 1.5조원(△12.7%) 감소할 전망
  - ▶ 재산수입은 5.1조원으로, 국제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은행 잉여금 수입 감소 등으로 2021년 대비 1.5조원(△23.1%) 감소할 전망

-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 6.8조원으로, 2021년 주식매각 이익실현 등에 대한 반락효과로 2021년 대비 0.3조원(△4.4%) 감소할 전망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80.1조원으로, 보수월액 상승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등에 따라 2021년 대비 4.4조원(5.8%) 증가할 전망
  - ▶ 연금기여금 수입은 15.8조원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에 따른 기준 소득월액 상승과 공무원 증원 계획 등을 반영함에 따라 2021년 대비 1.3조원(8.8%) 증가할 전망

표 4 2022년도 국세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1 NABO 전망 (A)	2022						
		예산안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C-A)		예산안 대비(C-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세외수입	203.3	210.2	211.1	7.8	3.8	1.0	0.5	
계 정 별	세외수입	30.4	26.7	27.3	△3.1	△10.2	0.6	2.2
	- 일반회계	14.0	11.9	11.5	△2.5	△17.8	△0.4	△3.6
	- 특별회계	16.4	14.7	15.7	△0.6	△3.8	1.0	6.8
	기금수입	173.0	183.5	183.9	10.9	6.3	0.4	0.2
주 요 항 목 별	세외수입	30.4	26.7	27.3	△3.1	△10.2	0.6	2.1
	- 경상이전수입	11.5	9.9	10.1	△1.5	△12.7	0.2	1.9
	- 재산수입	6.6	5.4	5.1	△1.5	△23.1	△0.3	△5.9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7.1	6.7	6.8	△0.3	△4.4	0.1	1.4
	기금수입	173.0	183.5	183.9	10.9	6.3	0.4	0.2
	- 사회보장기여금 <sup>1)</sup>	75.7	80.1	80.1	4.4	5.8	0.0	△0.0
	- 경상이전수입(연금기여금) <sup>2)</sup>	14.5	15.9	15.8	1.3	8.8	△0.1	△0.6

주: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및 근로자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3. 정부 전망과의 비교

#### 가.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2022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전망은 552.1조원으로, 정부 총수입 예산안(548.8조원)보다 3.2조원 높음

- 국세수입은 예산안 대비 2.3조원, 국세외수입은 1.0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전망은 340.9조원으로, 정부 예산안(338.6조원)보다 2.3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

-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의 기준이 되는 2021년 국세수입과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지표의 전망치를 정부보다 높게 전망한데 기인
  - ▶ '21년 8월 기준 국세수입 수납실적 호조세(전년동기 대비 55.7조원 증가)를 반영하여 '21년 국세수입을 정부 추경예산 대비 8.8조원 높게 전망
  - ▶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출입 증가율, 명목임금 상승률 등을 정부보다 높게 전망
    - ※ 수출입 증가율(수출/수입, %): (NABO) 4.2/3.4 (정부) 3.8/3.0
    - 명목임금 상승률(%): (NABO) 3.5 (정부) 2.5
- 주요 세목 중 법인세(3.4조원)는 정부 예산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세(△1.1조원)는 예산안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 법인세 전망이 정부를 상회하는 이유는 '22년 전망의 기준이 되는 '21년 법인세수 전망치가 정부 전망을 5.0조원 상회하고, 통관수출 및 회사채 금리 등 주요 거시지표 전망치가 정부보다 높기 때문
  - ▶ 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폭을 정부보다 크게 전망하였기 때문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외수입 전망은 211.1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10.2조원)보다 1.0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

- 국세수입과 마찬가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국세외수입 전망의 기준이 되는 2021년 국세외수입과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정부보다 높게 전망한데 기인
  - ▶ 정부와의 차이는 주로 기금수입에 수납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자산운용 수익에서 발생하며, 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인상 반영시기와 연금가입자수 및 기금운용수익 등 전망 차이에서 기인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인상: (NABO) '22년 7월부터, (정부) '23년부터

**표 5 2021~2022년도 총수입 전망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조원)

	2020 실적 (A)	2021			2022		
		추경예산 (B)	NABO 전망 (C)	추경예산 대비 (C-B)	예산안 (D)	NABO 전망 (E)	예산안 대비 (E-D)
총수입(I + II)	478.7	514.6	526.4	11.8	548.8	552.1	3.2
국세수입(I)	285.5	314.3	323.0	8.8	338.6	340.9	2.3
- 소득세	93.1	99.5	101.2	1.7	105.0	103.9	△1.1
- 법인세	55.5	65.5	70.5	5.0	73.8	77.2	3.4
- 부가가치세	64.9	69.3	69.8	0.5	76.1	76.1	0.0
국세외수입(II)	193.1	200.3	203.3	3.1	210.2	211.1	1.0
세외수입	26.9	29.3	30.4	1.1	26.7	27.3	0.6

(단위: 조원)

	2020 실적 (A)	2021			2022		
		추경예산 (B)	NABO 전망 (C)	추경예산 대비 (C-B)	예산안 (D)	NABO 전망 (E)	예산안 대비 (E-D)
기금수입	166.2	171.0	173.0	2.0	183.5	183.9	0.4
- 사회보장기여금	74.6	77.0	75.7	△1.4	80.1	80.1	0.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수입을 2021년 526.4조원에서 2025년 619.0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정부는 2020년 514.6조원에서 2025년 618.5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은 2021~2022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정부보다 높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전망 등의 차이로 인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정부 전망 대비 연간 △5.5~△5.7조원 낮은 수준
  - ▶ '21~'25년 경상GDP 성장률 전망: (NABO) 3.7%, (정부) 4.0%,
- 국세외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사회보장기여금을 매년 높게 전망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와 정부 전망치의 차이가 증가
  - ▶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전망 차이는 주로 국민연금 기여금 전망 차이에서 기인
  - ※ 정부는 국민연금 사회보장기여금이 2022년 이후 매년 1%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여,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보수적으로 전망

표 6 2021~2025년도 총수입 전망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 연평균증감률 /합계
NABO (A)	총수입	526.4	552.1	569.6	593.5	619.0	(4.1)
	국세수입	323.0	340.9	347.4	362.0	377.5	(4.0)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4.4)
	경상GDP 성장률	5.6	4.2	3.7	3.5	3.4	(3.7)
정부 (B)	총수입	514.6 <sup>1)</sup>	548.8	570.2	593.9	618.5	(4.7)
	국세수입	314.3	338.6	352.9	367.7	383.1	(5.1)
	국세외수입	200.3	210.2	217.3	226.2	235.4	(4.1)
	경상GDP 성장률	5.6	4.2	4.0	4.0	4.0	(4.0)
차이 (A-B)	총수입	11.8	3.3	△0.5	△0.4	0.5	[14.7]
	국세수입	8.8	2.3	△5.5	△5.7	△5.7	[△5.7]
	국세외수입	3.1	1.0	5.0	5.3	6.2	[20.5]

주: 1) 제2회 추경예산 기준임

1. ( )는 연평균 증가율, [ ]는 합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백수연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5)

## 1. 2021년 세법개정안

2021년 11월 5일 기준 국세 부문 총 28개 소관 법률 중 24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 584건<sup>1)</sup>이 기획재정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 세법개정안 심사에서는 선도형 경제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

### 가. 정부안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마련과 투자·소비 촉진, 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6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으로 제출

- 선도형 경제전환 및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주요 개편안
  -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바이오 등 신산업기술 추가
  - ▶ OTT(Over the Top)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주요 개편안
  -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가구별 현행 대비 200만원 인상)
  -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2022.1.1. 이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포함)
  - ▶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40%) 및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 경형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과세기반 정비 및 조세제도 합리화 관련 주요 개편안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상장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1) 「청년세법안」, 「탄소세법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사회연대특별세법안」 등 4건의 제정안을 포함할 경우 588건

- ▶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3년 연장(2021년 말 → 2024년 말)
- ▶ 가상자산의 체납 국세 충당 근거 마련

## 나. 의원안

2021년 11월 5일 기준 560여건 이상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계류중으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세제지원 방안 모색에 주력

-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개편안
  - ▶ 탄소세 신설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용혜인·장혜영의원안)
  - ▶ 가상자산 과세 개시 시점을 2023년 또는 2024년으로 유예(윤창현·노용래·유경준의원안)
  - ▶ 지방소비세율 상향(이해식·김영진의의원안)
  - ▶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에 청년세 부과(장경태의원안)
  - ▶ 서화·골동품·문화유산·미술품 등을 통한 상속세 물납 허용(이광재·전용기·박정의의원안)
- 정부안 대비 확대안
  -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김경만·정찬민·추경호·양정숙·유경준의원안)
  - ▶ 경형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환급 한도액 상향 등(전주혜·이병훈·추경호의원안)
  - ▶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세(이장섭·고용진·박완주의의원안)

## 2.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분석

### 가. 정부안의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2022~2026년 5년 합계  $\Delta 5.8$ 조원으로 전망

- 법인세는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으로 5년간 4.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세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1.7조원 감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등에 기인하여 0.2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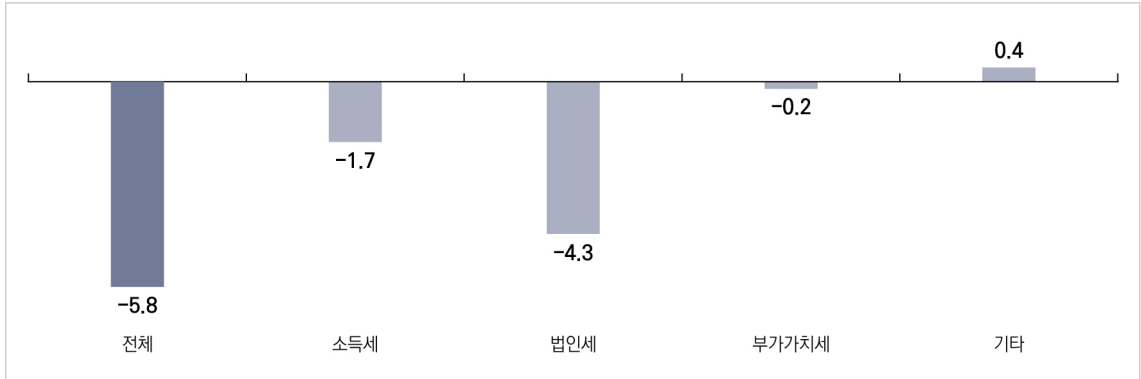
한편, 정부는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2022~2026년 5년 합계  $\Delta 7.2$ 조원으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세수효과 차이는 대부분 법인세 세수효과의 차이에 기인
  - ▶ 대표적으로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한시 적용한 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따라 2025년까지 세수 감소를 추계하였으나, 정부는 2025년 이후에도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6년까지 추계



그림 1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2~2026년 누적

(단위: 조원)



주: 기준연도(2021년) 대비 증감액을 누적인 누적법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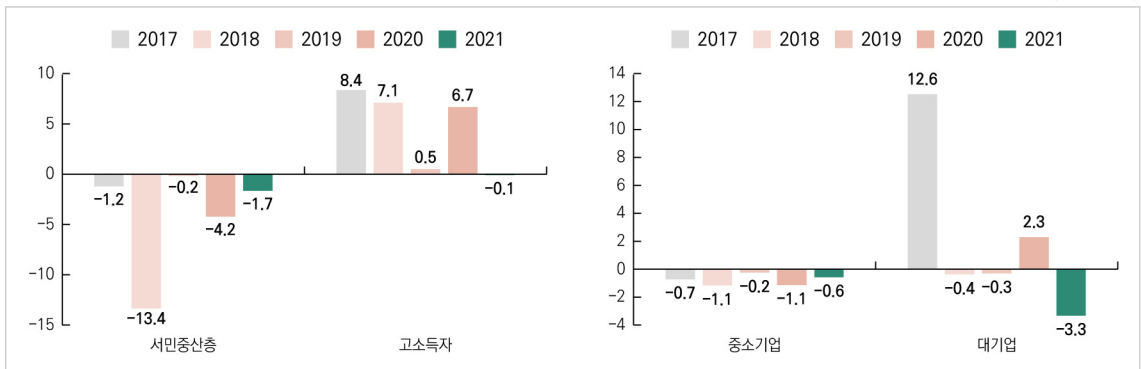
## 나. 정부안의 세부담 귀착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은 1.7조원(2022~2026년 합계, 이하 동일), 고소득자 0.1조원, 중소기업 0.6조원, 대기업 3.3조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몇 년간 세제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법개정 기초가 지속된 가운데, 2021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에 해당

그림 2 2017~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5년 누적

(단위: 조원)



주: 누적법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 조세지출 정비 분석

### 조세지출 정비항목은 54개, 세수효과는 5년간 5.2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121개 조세지출 항목 중 정비항목은 54개(신설 7/확대 32, 폐지 11/축소 4), 단순 일몰연장 항목은 67개에 해당
- 조세지출 정비에 따라 향후 5년간 5.2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설·확대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가 폐지·축소로 인한 세수증가 규모보다 큼
  - ▶ 신설·확대로 인한 세수증가 5.4조원, 폐지·축소로 인한 세수감소 0.1조원
- 최근의 조세지출 확대는 경기 대응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한 노력 필요
  - ▶ 취약계층 지원·경기활성화 등 정책적 목적에 의한 세제지원 확대로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노력 필요

표 1 2021년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정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신설·확대	△7,698	△13,730	△14,426	△14,735	△2,838	△53,697
폐지·축소	239	242	241	241	241	1,203
합 계	△7,729	△13,489	△14,185	△14,495	△2,597	△52,494

자료: 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3. 세목별 주요 개정사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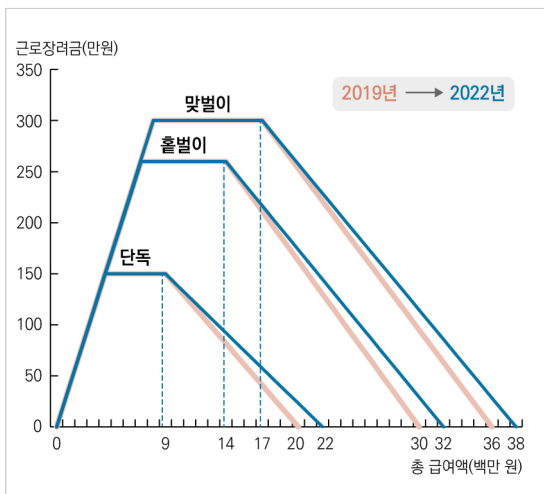
### 가. 소득세

####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개정안)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 ▶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각각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에서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으로 상향조정
  - ▶ 근로소득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다음해 9월에서 다음해 6월(하반기분 지급시 정산)로 3개월 단축
- (세부담 변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시 소득세수는 2022~2026년 동안 총 1조 3,139억원, 연평균 2,627억원 감소할 전망

- ▶ 근로장려금 수혜가구는 2020년 대비 약 55만 가구 증가 예상
- (분석의견) 최저임금 상승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나,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초 취지인 저소득가구 근로유인 제고 효과에 대한 점검 필요
  - ▶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가구는 9.0%(2018년)에서 20.2%(2019년)로 확대, 30세 미만·단독가구 중심으로 증가,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2018년 1.3조원에서 2019년 4.5조원으로 확대
  - ▶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장려금 수혜가구는 현행(2020년) 대비 약 55만가구(단독 33.7만가구, 홑벌이 17.7만 가구, 맞벌이 3.9만가구) 증가 예상
  - ▶ 지급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운영 방안 모색 필요

**그림 3** 근로장려금제 개편 모형(2019년 → 2022년)



**표 2**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2019년 기준)

(단위: 천가구)

연령	전체 가구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급가구 비중
	(A)	(B)	(B/A)
전체	20,343	4,102	20.2%
30세 미만	1,591	1,145	72.0%
30대	3,124	549	17.6%
40대	4,259	662	15.5%
50대	4,800	752	15.7%
60대	3,529	592	16.8%
70세 이상	3,040	402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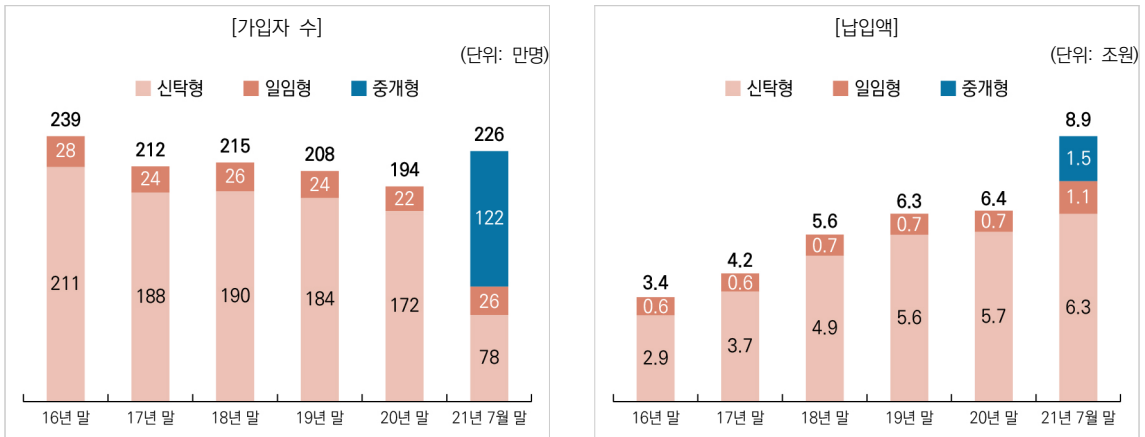
주: 인구총조사의 2019년 가구주 연령별 총가구수 대비 2019년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9; 국세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상장주식 비과세 확대**

- (개정안) 2023년부터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을 비과세
  - ▶ (현행) ISA 내 모든 금융상품의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 ▶ (개정안)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에 한하여 전액 비과세로 전환
- (분석의견)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상 불균형 해소 및 ISA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비과세 혜택의 형평성 및 유사 조세지출의 정비 측면에서의 점검·관리도 병행해나갈 필요
  -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시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할 예정으로, 현행 ISA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ISA를 통한 투자의 유인이 감소할 우려

- \* 개정 시 ISA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은 주로 금융투자소득이 기본공제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예상
-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규모,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
- ▶ ISA 비과세 확대와 더불어 동 조세지출 제도 전반의 감면 규모 및 성과에 대하여 임의심층평가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산형성 및 저축지원 목적의 유사 조세지출 제도 간 중복 최소화 등 정비도 병행될 필요

그림 4 ISA 유형별 가입 현황: 2016년 12월 말 ~ 2021년 7월 말



주: 신택형 ISA는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일임형 ISA는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투자를 일임하여 운용하며, 중개형 ISA는 금융회사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투자하는 형태로 운용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홈페이지, "http://isa.kofia.or.kr"

## 나. 법인세

### (1)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개정안)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대상 R&D 및 투자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신설
  - ▶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 등 65개 분야를 지정할 예정
  - ▶ 해당 기술 R&D 투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가 가능하며, 시설투자의 경우 최대 20%까지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 허용
  - ▶ 2021년 7월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며,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세부담 변화) 국가전략기술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2022~2025년 총 4조 3,751억원, 연평균 1조 938억원의 세수 감소 예상

- (분석의견)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세제지원 대상 기술분야 선정에 대한 합리성 제고 필요
  - ▶ 반도체·배터리 분야는 미래 선도기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백신은 코로나19 이후 국가경제·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부상하여 해당 분야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인정
  - ▶ 대상기업의 유효세율 변화를 추정한 결과, 평균 유효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세제지원 강화로 인한 기업의 재투자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
  - ▶ 다만 특정 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대상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R&D·투자 세제지원이 3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제도 복잡성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표 3**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개요

[현 행]				[개정안]				
				(단위: %)				
<b>1. R&amp;D 세액공제</b>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	일 반	8	25	
신성장·원천	20~30		30~40		신성장·원천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b>2. 시설투자 세액공제</b>								
	당기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증가분
일 반	1	3	10	⇒	일 반	3	10	3
신성장·원천	3	5	12		신성장·원천	5	12	3
					국가전략기술	8	16	4

## (2) 고용분야 세제지원 강화

- (개정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의 확대연장
  - ▶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면서, 비수도권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면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요건 추가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공제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제요건 정비
  -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을 퇴직 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 ▶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세부담 변화) 고용분야 세제지원 확대연장으로 2022~2027년간 총 6조 5,417억원, 연평균 1조 2,128억원의 세수 감소 예상
- (분석의견) 개정안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과 높은 활용도, 고용증대에 미치는 효과성은 인정되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지역별 차등적 확대안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 필요
  - ▶ 2021년 8월 기준으로 취업자수, 고용률 등 고용지표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고용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은 타당
  - ▶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동 세액공제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세액공제가 고용증대에 효과를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공제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지역별로 공제금액 차등하여 확대하는 안은 수도권의 고용현황 등을 감안할 때 지역별 차등 없이 전국적으로 공제액을 상향하는 안으로 검토할 필요

**표 4** 고용지원 공제항목별·기업규모별 법인세 감면 신청 현황: 2020년 기준

	감면기업수(A,만개)			감면액(B,억원)			1법인당 감면액(B/A,억원)		
	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세액공제 계	11.6	10.4	1.2	84,393	24,865	59,528	0.72	0.24	4.89
고용증대 세액공제	2.8 (24.0)	2.6 (25.4)	0.1 (12.0)	8,629 (10.2)	6,212 (25.0)	2,417 (4.1)	0.31	0.23	1.6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4 (20.4)	2.4 (22.7)	0.0 (0.1)	1,943 (2.3)	1,936 (7.8)	7 (0.0)	0.08	0.08	1
기타 <sup>1)</sup>	0.5 (0.4)	0.4 (0.3)	0.1 (1.0)	237 (0.3)	122 (0.5)	115 (0.2)	0.49	0.34	0.91

주: 1) 고용분야 세제지원 공제항목별 감면기업의 단순합과 실제 감면기업수는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인해 차이가 존재하여 집계 어려움  
 1. ( )안은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신청기업 대비 비중(%)으로, 전체 세액공제 신청법인인 11.6만개(중소기업 10.4만개, 일반법인 1.2만개), 세액공제액은 8.4조원(중소기업 2.5조원, 일반법인 6.0조원)임  
 2. 기타는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고용유지 세액공제를 포함하며, 감면기업수는 중복이 없다고 가정하고 합산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다. 소비세

### (1)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연장

- (개정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및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 우대 공제율 1.0% → 1.3%, 우대 공제한도 500만원 → 1,000만원
- (세부담 변화) 부가가치세수는 2022년 5,734억원 등 2022~2023년 2년 간 총 1조 1,691억원(연평균 5,846억원) 감소
  - ▶ 2020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만명이며, 1인당 평균 공제액은 114만원으로 이중 우대 공제율에 따른 감면액은 26만원
- (분석의견) 개정안은 최근 어려움이 가중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나,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정비 논의 시 동 제제도 포함하여 검토 필요
  - ▶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의 한시적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지원 측면에서 타당
  - ▶ 다만 손실보상 조치 및 워드코로나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매출이 정상화되어 개인사업자의 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 적용을 종료할 필요
  - ▶ 나아가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세특례 제도의 정비를 논의할 경우 동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비방안 모색 필요

## (2)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4년 말로 3년 연장
- (세부담 변화)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은 세부담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이 종료되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세입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로 귀속
  -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⑧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준하여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개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 (분석의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세제개편 논의 필요
  - ▶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일곱번째로 연기하는 것으로, 기존 일몰기한 연장 시 제기되었던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 또한 탄소중립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탄소세에 관한 논의가 개진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 여부도 논의되고 있음
  -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연장 및 폐지 여부, 폐지 시 신규 세목의 도입 여부 및 운영 방안 등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인 논의 필요

#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대 정 립 · 김 문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2, 4654)

## 1.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현황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548.8조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sup>1)</sup> 514.6조원 대비 34.2조원 (6.7%) 증가한 규모

- 2022년도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은 338.6조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따른 주요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수 증가를 반영하여 2021년 추경예산 314.3조원 대비 24.4조원(7.8%) 증액 편성
  - ▶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증가세가 유지되는 반면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조정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 등은 소폭 감액 편성
- 2022년도 정부 국세외수입 예산안은 210.2조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200.3조원 대비 9.9조원(4.9%) 증액 편성
  - ▶ 기금수입은 183.5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재산수입 증가 전망 등을 반영하여 2021년 추경예산(171.0조원) 대비 12.5조원(7.3%) 증액 편성

표 1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단위: 조원, %)

	2020 실적	2021		2022 예산안 (C)	본예산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C-B)	
		본예산 (A)	추경예산 <sup>1)</sup> (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478.8	482.6	514.6	548.8	66.2	13.7	34.2	6.7
국세수입	285.5	282.7	314.3	338.6	55.9	19.8	24.4	7.8
국세외수입	193.1	199.9	200.3	210.2	10.3	5.2	9.9	4.9
세외수입	26.9	28.9	29.3	26.7	△2.2	△7.6	△2.6	△8.9
기금수입	166.2	171.0	171.0	183.5	12.5	7.3	12.5	7.3
- 사회보장기여금	74.6	77.0	77.0	80.1	3.1	4.0	3.1	3.9

주: 1) 추경예산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 이하의 분석에서 사용하는 '국세외수입'은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을 제외한 개념으로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합계를 의미함

2.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사회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기여금 수입의 합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준



## 2. 2022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분석

### 가. 국세수입 예산안 분석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은 현 시점에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세수 둔화 위험도 상존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국세수입을 340.9조원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338.6조원을 2.3조원(0.7%) 상회할 것으로 전망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수지가 지속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 필요

-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신성장 동력 투자 지원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 측면의 부담은 지속될 전망
-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 뿐 아니라 재정수입 관점에서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출 축소·폐지, 사회·경제 구조 전환기에 대응하는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전개

### 나.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는 2020년 52.9조원에서 2022년 59.5조원으로 증가할 전망

- 2022년 기준 감면규모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는 총 45.8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액(59.5조원)의 76.9%를 차지
  - ▶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일몰규정 없는 항목은 13개로 동 항목의 감면액('22년 전망 32.5조원)은 상위 20개 항목 감면액(45.8조원)의 71.0% 차지
  - ▶ 일몰규정 없는 항목 13개 중 정부의 적극적 관리유형 항목도 3건 존재

최근 법정한도 근접 또는 상회하는 수준을 보인 국세감면율<sup>2)</sup>은 2022년에는 법정한도 기준을 충족할 전망, 한편 정부는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국세감면을 소수점 처리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준수여부 판단에 있어 비일관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

- 최근 3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최소 0.09%p~최대 1.34%p 상회, 2022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8%)를 0.57%p 하회할 전망

2)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 총액)

- 2022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는 국세수입 호전에 따른 국세감면율 하락이 주된 원인이나, 최근 국세감면율 증가로 인해 법정한도 자체가 상승한 영향도 존재
- 기존 국세감면율 계산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반면 올해는 버림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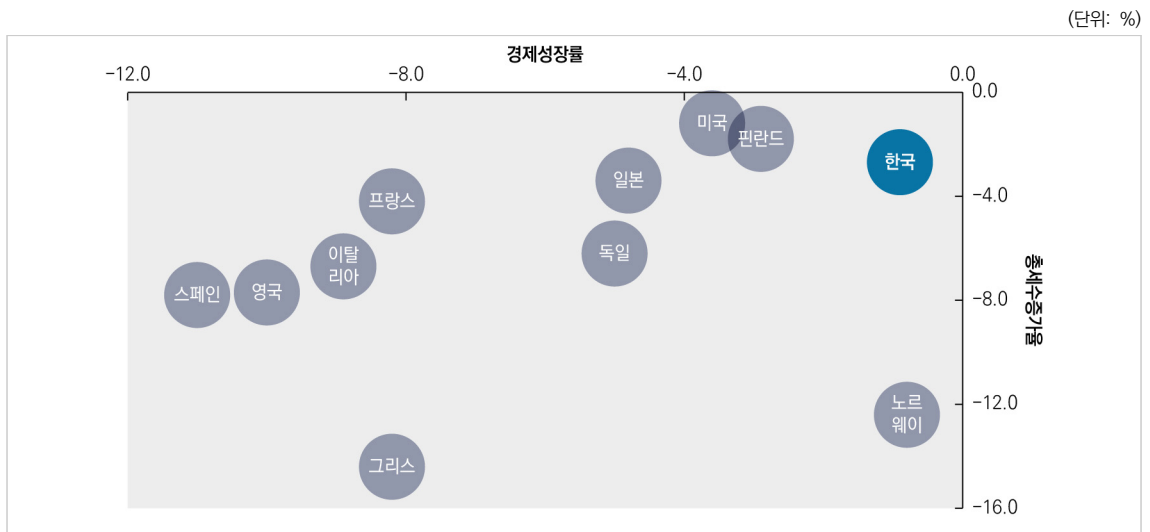
### 다. 주요 이슈 분석

####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와 세입기반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경제성장률 둔화 및 조세수입 감소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에 해당

- 코로나19 위기 이전 2016~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10.4%로 경상 GDP 성장률 평균 4.3%를 상회, 코로나 19 위기 이후 2020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2.7%를 기록

그림 1 주요 국가의 2020년 경제성장률과 조세수입 증감률 비교



자료: 성장률은 IMF, 조세수입 자료는 EU(EUROSTAT), 일본(MoF), 영국(National Statistics), 미국(DoT)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하락 추세에서는 일부 회복될 전망, 향후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 및 환경변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상존 및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 약화는 세입기반 정체 내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 ▶ 코로나19 변이 확산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공급체인 병목에 따른 물가상승, 미·중 분쟁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
  - ▶ 코로나19로 유발된 비대면 소비 확대, 디지털경제 가속화, 자동화 및 ESG 경영 본격화, 친환경 이슈 등장 등 경제 구조의 변화도 예상
- 조세수입의 중장기 운용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점검·관리와 함께 최근 확대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과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세법개정안에 충실히 환류할 필요

**2) 예산안 첨부서류의 정확도 및 신뢰성 제고**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감면규모 1,0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 항목(46개)의 전망 오차를 평균(절대값)은 세목별로 10.1~23.9% 수준으로 분석**

- 24개 항목은 과소전망(2조 824억원), 22개 항목은 과다전망(1조 5,918억원) 발생
-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감면 전망치의 추계근거를 공개하여 전망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한편, 관리대상 유형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
  - ▶ 조세지출 유형별(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 분류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에 대한 중장기적 정비 로드맵 필요

**표 2** 1,000억원 이상 조세지출 항목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2020년

(단위: 개, 억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계	
	항목수	오차액	항목수	오차액	항목수	오차액	항목수	오차액
과소전망 (5%이상)	14 (10)	△12,983	6 (4)	△7,024	4 (2)	△817	24 (16)	△20,824
과다전망 (5%이상)	14 (8)	8,541	3 (3)	1,744	5 (3)	5,633	22 (14)	15,918
합계	28 (18)	△4,442	9 (7)	△5,280	9 (5)	4,816	46 (30)	△4,906

자료: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sup>3)</sup>는 세수오차 축소를 통한 정부 재정운용의 신뢰도 제고 등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망오차 분석을 실시할 필요**

- 현재 제출되고 있는 보고서는 전년도 세입결산 증감 실적과 차년도 세입예산 현황을 정리한 단년도 보고자료에 해당
- 세입예산의 대규모 전망오차는 합리적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다각적인 전망오차 분석을 수행할 필요
  - ▶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세입예산 전망오차 분석 결과를 예산서 및 별도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며, 세입전망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변수 오차분석, 세목별 전망오차, 민감도 분석 등 다양한 오차분석을 실시 중

### 3. 2022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분석

#### 가. 2022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주요 항목별 분석

**2022년도 정부 국세외수입 예산안은 210.2조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200.3조원 대비 9.9조원(4.9%) 증가**

-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은 재산수입<sup>4)</sup>, 경상이전수입<sup>5)</sup> 감액에 따라 2021년 추경예산 13.7조원 대비 1.8조원(△12.8%) 감액된 11.9조원
-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안은 경상이전수입<sup>6)</sup> 감액에 따라 2021년 추경예산 15.6조원 대비 0.9조원(△5.5%) 감액된 14.7조원
- 기금 수입 예산안은 가입자 증가 및 보수월액 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 용자사업 지속 확대에 따른 원금 상환 및 이자수입 증대 등에 따른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증가 등에 따라 2021년 추경예산 171.0조원 대비 12.5조원(7.3%) 증액된 183.5조원

3) 동 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근거한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①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②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분석, ③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4) 정부가 2021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이 2020년 당기순이익보다 낮을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한국은행 잉여금 예산액이 전년 대비 1조 905억 원 감액된 것에 주로 기인  
5) 법무부의 벌금 및 과료 5,875억원 감액(최근 3년 수납액 평균 반영), 국세청의 가산금 1,349억원 감액(세법개정에 따른 감소요인 반영) 등  
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 1,775억원 감액(2022년 예상 전력판매량 및 예상 판매단가 하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부담금 3,734억원 감액(통신사업자 주파수할당대가 감액), 정보통신진흥기금 법정부담금 4,564억원 감액(기할당 주파수 및 신규 주파수 할당대가 감액) 등

표 3 2022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단위: 조원, %)

	2020 실적	2021		2022 예산안 (B)	2021년 추경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예산(A) <sup>1)</sup>		증감액 (B-A)	증감률 (B-A)/A
국세외수입	193.1	199.9	200.3	210.2	9.9	4.9
세외수입	26.9	28.9	29.3	26.7	△2.6	△8.9
일반회계	11.7	12.9	13.7	11.9	△1.8	△12.8
- 재산수입	4.5	5.3	6.1	5.1	△1.0	△16.7
- 경상이전수입	6.3	6.3	6.3	5.7	△0.7	△10.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7	0.8	0.8	0.8	△0.0	△4.9
- 수입대체경비	0.1	0.3	0.3	0.2	△0.0	△13.5
- 관유물매각대	0.1	0.1	0.1	0.1	0.0	8.1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0.0	0.0	0.0	0.0	0.0	2.4
특별회계	15.2	16.0	15.6	14.7	△0.9	△5.5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4	6.4	6.4	6.7	0.4	5.7
- 재산수입	0.6	0.8	0.4	0.3	△0.1	△26.9
- 경상이전수입	4.7	5.0	5.0	4.2	△0.8	△15.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	1.7	1.7	1.6	△0.2	△8.7
- 수입대체경비수입	-	0.0	0.0	0.0	0.0	15.7
- 관유물매각대	1.0	0.9	0.9	0.7	△0.2	△20.0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0.9	1.2	1.2	1.2	0.0	0.7
기금	166.2	171.0	171.0	183.5	12.5	7.3
- 사회보장기여금	74.6	77.0	77.0	80.1	3.0	3.9
- 재산수입	28.4	26.8	26.8	29.3	2.5	9.5
- 경상이전수입	26.6	31.0	31.0	32.6	1.6	5.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6	7.9	7.9	8.8	0.9	11.7
- 관유물매각대	1.8	2.0	2.0	2.2	0.1	6.6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7.3	26.2	26.2	30.5	4.3	16.4
- 수입대체경비수입	0.0	0.0	0.0	0.0	△0.0	△92.8

주: 1)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단순조정으로 인한 차이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사회보장기여금 계획안은 80조 735억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77조 320억원 대비 3조 415억원(3.9%) 증액**

- 사회보장기여금의 계획 대비 실적의 오차 최소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할 필요
  - ▶ 최근 4년간 사회보장기여금의 계획 대비 실적 연평균 오차율을 보면 국민연금기여금 3.5%, 사학연금기여금 3.9%, 고용보험기여금 6.9%, 산재보험기여금 4.4%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2020년 계획 대비 실적이 6.6%의 오차를 보임
  - ▶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이후 기여금이 매년 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기여금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추계를 바탕으로 전망할 필요

**경상이전수입 예산안은 42조 4,696억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42조 3,511억원 대비 1,185억원(0.3%) 증액**

- 경상이전수입 항목 중 연금수입은 1조 2,481억원 증액 편성된 반면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를 포함한 다른 항목은 모두 전년대비 감액 편성
- 과거 수납액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거 수납실적이나 향후 수입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
  - ▶ 고용노동부 소관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과태료 등의 경우 징수실적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재산수입 예산안은 34조 7,041억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33조 2,934억원 대비 1조 4,107억원(4.2%) 증액**

- 주택임대수입 증가 전망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관유물대여료 예산안이 전년 대비 7,687억원 증액 편성된 것에 주로 기인
- 주택도시기금 정부출자수입 및 국토교통부 토지대여료 수입은 연례적으로 과소·과대 편성되고 있으므로 합리적 예산편성 필요
  - ▶ 주택도시기금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은 정부가 공사에 납입할 예상자본금에 최근 2년간 배당액 평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지침<sup>7)</sup>에 따른 대상 기업의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예산안은 6조 7,385억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6조 3,736억원 대비 3,649억원(5.7%) 증액**

- 금리인상에 따른 운용수익 및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사업수입 증대를 반영하여 우정사업수입 예산안이 전년 대비 3,076억원 증액된 것에 주로 기인

7)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배당수입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 고려 요소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명시

- 전년 대비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및 금융사업수입 과소수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 우편사업은 2019년 우편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용 증가 및 국제우편 물량 감소 등으로 사업수익이 개선되지 않았고, 최근 10년간 246억원~1,450억원의 경영수지 적자를 기록
  - ▶ 금융사업수입의 최근 3년(2018~2020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연례적인 과소수납이 발생(수납률 63.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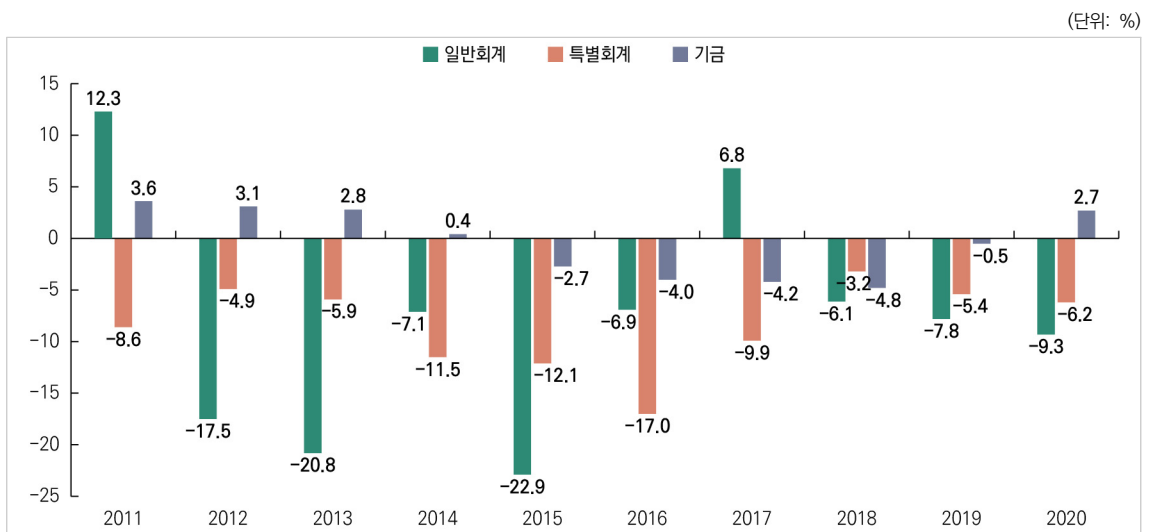
## 나. 주요 이슈 분석

### 1)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 제고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최근 추세 및 예산에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심사조정 후 오차율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

- 최근 10년간 국세외수입 전체의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은 2016년 5.5%를 정점으로 2020년에는 1.1%로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은 2011년, 2017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과소수납 오차를 기록

그림 2 최근 10년 간(2011~2020)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이 5,000억원 이상인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와 이를 심사·조정한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요구서의 3개년(2018~2020년) 절대평균 오차율은 1.1%~34.8%이고 정부예산안의 3개년 절대평균 오차율은 2.4%~21.0%
- 각 중앙관서는 최근 추세 및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예산요구서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
  - ▶ 예산요구서 작성시 과거 실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오차율이 확대되는 경향 존재
-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조정 후 오차율이 확대된 항목에 대해 중앙관서 의견을 보다 반영하는 등 심사조정 후 오차율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할 필요
  - ▶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의 경우 정부예산안의 절대평균 오차율이 예산요구서의 절대평균 오차율보다 높게 나타남

## 2) 사회보험성 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 방안 검토

**사회보험성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수익률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기금별 목표수익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무원연금은 부족분을 국가 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기금에서 투입되는 자금과 운용 실적 등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
- 사회보험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가 중요하므로 기금별 목표수익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

## 3) 중기 세외수입 전망의 일관성 검토

**중기 세외수입 전망이 합리적 근거없이 매년 수정되고 있으며, 각 연도별 증감률 변동 방향성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세외수입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

- 각 연도 중기 세외수입 증감률의 표준편차는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 증감률 표준편차의 두 배
  - ▶ 표준편차(예산연도 포함, %): 세외수입 2.96, 국세수입 1.56, 기금수입 0.98
- 세외수입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전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



# 추계&세제 최근이슈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소개: 호주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 캐나다편 -



#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

박 선 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1)

## 1. 비대면 진료 개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비대면 진료 수요가 확대

- OECD 38개 회원국 중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터키의 5개국(우리나라는 조사 미응답)을 제외한 32개국이 '원격의료(telemedicine)'를 도입<sup>1)</sup>
- 코로나19 발생과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주요국들은 자국민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면진료를 줄이고 비대면의료를 활성화함
  - ▶ 미국은 한시적으로 메디케어(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공적의료보험)의 비대면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sup>2)</sup>
  - ▶ 영국에서는 전화 및 화상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게 24시간 전화상담 제공<sup>3)</sup>
  - ▶ 일본에서는 재진환자만 가능했던 온라인 및 전화진료에 대하여 초진환자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sup>4)</sup>

우리나라는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인하여 2020년 2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sup>5)</sup>

- 의사-의료인(간호사 등을 포함) 간 원격의료는 2020년 개정된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
-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2010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sup>6)</sup>을 시작으로 제18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는 반영되지 않음

1) Tiago Cravo Oliveira Hashiguchi(2020), "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16.  
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방문일: 2021.10.16.〉,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telehealth.html>)  
3)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2021)'Direct and Indirect health impacts of COVID-19 in England,' 2021.9.17.  
4) 일본 후생노동성(JHPN), 〈방문일: 2021.10.14.〉, (<http://japanhpn.org/en/ict-home-2/>)  
5)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시행되었고, 법 개정은 2020년 12월에 이루어짐  
6) 2010년 4월 8일 발의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1808132)은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내용

**표 1**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의안 발의 현황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내용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1808131	정부	2010.4.8.	의사와 환자 간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을 허용
	1909995	정부	2014.4.2.	의사와 도서지역의 재진 및 경증환자 간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을 허용
	2000397	정부	2016.6.22.	의사와 도서지역 및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환자 간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을 허용
	2011704	유기준의원	2018.2.1.	의사와 도서지역 및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환자 간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을 허용
	2112756	강병원의원	2021.9.30.	의사와 만성질환자 간 원격으로 진료, 상담, 관찰하는 것을 허용
	2112870	최혜영의원	2021.10.18.	현행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위기 이후에도 실시하도록 하되, 섬·벽지에 있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허용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자,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
  - ▶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예방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7)하여 2021년 9월 6일까지 약 276만건(대리인처방 포함 시 약 392만건)의 비대면 진료 시행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신설(2020.12.15.)<sup>8)</sup>)

**본 고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원격의료’를 의사와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를 먼 거리의 의사와 환자 간 진료행위로 정의**

-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제1항<sup>9)</sup>에 따라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 의료지식과 기술 지원으로 정의
-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먼 거리의 의사-환자 간 진료로 정의
- OECD와 WHO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에 대하여 의료인과 의료인 혹은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국내법 상의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20.3.2.’), 제2020-889호(‘20.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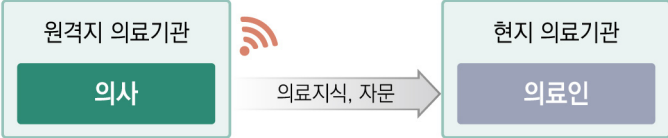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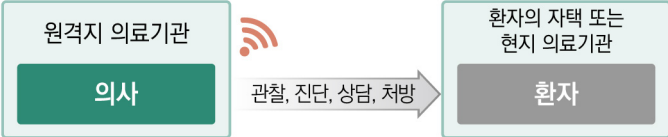
8)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 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9)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 OECD 보고서<sup>10)</sup>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모니터링, 임상데이터 전송 및 관련 자문, 양방향·실시간 비대면 진료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 ▶ 세계보건기구(WHO)<sup>11)</sup>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의료인이 원거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질병 및 부상의 진단, 치료 및 예방, 연구 및 평가, 지속적인 정보교환,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정의

**표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관련 용어 정의**

구분	용어	정의	비고
	원격의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근거법률: 「의료법」 제34조제1항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가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 	근거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OECD	telemedicine (원격의료)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모니터링, 임상데이터 전송 및 관련 자문, 양방향·실시간 비대면 진료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를 포괄하는 개념
WHO		의료인이 원거리에서 환자에 대한 질병 및 부상의 진단, 치료 및 예방, 연구 및 평가, 지속적인 정보교환,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료: Tiago Cravo Oliveira Hashiguchi(2020), WHO(200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0) Tiago Cravo Oliveira Hashiguchi(2020), 위 보고서.

11) World Health Organization(2009), "Telemedicine: Opportunities and developments in member states," Global Observatory for eHealth series Vol.2

## 2. 우리나라 원격의료 도입 현황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 2000년에 강원도 16개 시군구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 자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
- 2002년 3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 본격 도입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4년부터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9월부터 1단계 사업으로 고혈압·당뇨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 ▶ 2단계 사업(2015.4월~2016.3월)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도서벽지의 공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및 가정에 있는 환자로 대상 확대
  - ▶ 3단계 사업(2016.4월~2016.12월)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만성질환자까지 이용 범위를 확장

표 3 2014~2016년 원격모니터링·진료 관련 시범사업 상세내용

(단위: 명)

	1단계 (2014.9~2015.3)	2단계 (2015.4~2016.3)	3단계 (2016.4~2016.12)
세부사업명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진료 시범사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진료 시범사업	경증·만성질환자 등 대상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 시범사업
대상자	의원 만성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의원 만성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노인요양시설	의원 만성질환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재외국민
참여 지역 및 기관	서울(송파), 충남(보령), 전남(신안), 강원(홍천), 경북(영양)	충남(보령), 전남(신안, 진도) 및 노인요양시설 및 도서벽지 공용시설	전남, 충남, 인천지역 보건지소(진료소) 등
참여 환자 수	712	1792	1536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거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2017년에 경증·만성질환을 가진 의료취약지·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인 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진행
  - ▶ 보건복지부에서는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경기 지역에서 원격모니터링·진료를 소관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전남, 인천지역에서의 원격모니터링·진료를 소관
  -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일반회계)」의 내역사업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2021년 예산 40.4억원)을 통해 원격지에 화상장비와 협진수가비(진료비) 등을 지원

- ▶ 2020년에는 9개 시·도, 48개 시·군·구, 437개 기관에서 참여하였고, 2021년에는 8개 시·도, 47개 시·군·구, 428개 기관에서 참여

표 4 2017~2021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상세내용 및 예산액

(단위: 개소, 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상자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 중 의사와 의료인이 협의하여 원격협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질환(고혈압, 당뇨, 치매 등)을 보유한 재진환자				
참여 개소	213	199	419	437	428
예산	60	18	45	45	40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 및 이용 특징

현재 시행중인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 외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2020.2.23.)됨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전화처방, 대리인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이용한 의료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고,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전송
  - ▶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
  - ▶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9월 6일까지 11,936개 의료기관에서 참여, 약 276만건(대리인처방 포함 시 약 392만건)의 비대면 진료 시행
-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sup>12)</sup>의 요양시설 방문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를 운영
  - ▶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는 계약의사가 월 2회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을 평가하고 처방전을 발급
  - ▶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의사가 방문하는 대신 우선상담을 실시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계약의사 제도'를 운영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약 11만 2천건(환자 약 2.5만명)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
-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침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진료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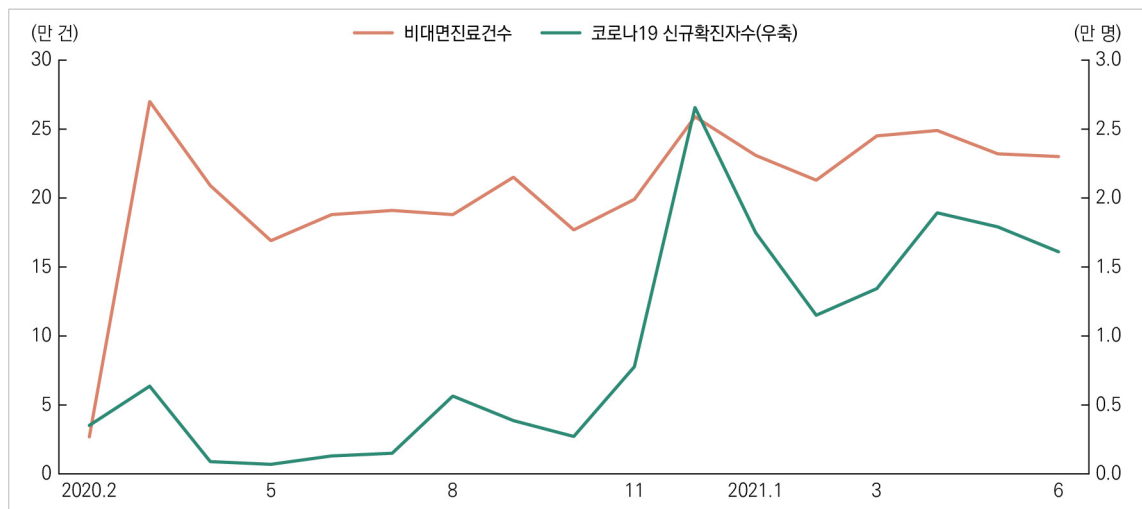
12)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의사'가 방문하여 월 2회 진찰을 하도록 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나목)

- ▶ 환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진료과와 상담 시간을 선택, 증상을 간략하게 남기면 의사가 확인 후 예약한 상담 시간에 전화를 걸어 진료를 하는 방식
- ▶ 전화상담 후 의약품 처방이 발생하면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의약품 복약지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의약품은 택배 혹은 자체배송 등으로 배송 가능
-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의 당초 취지와 달리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처방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여, 이러한 의약품에 대해 2021년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이 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 시기와 지역에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대리처방 합산)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

-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 시행 이후 20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건수도 약 2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20년 12월 약 25.9만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
  - ▶ 이는 2021년 10월 6일 조사한 자료로, 2021년 7월과 8월의 경우 미청구<sup>13)</sup>된 건을 포함할 경우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그림 1 월별 비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추이(2020.2월~2021.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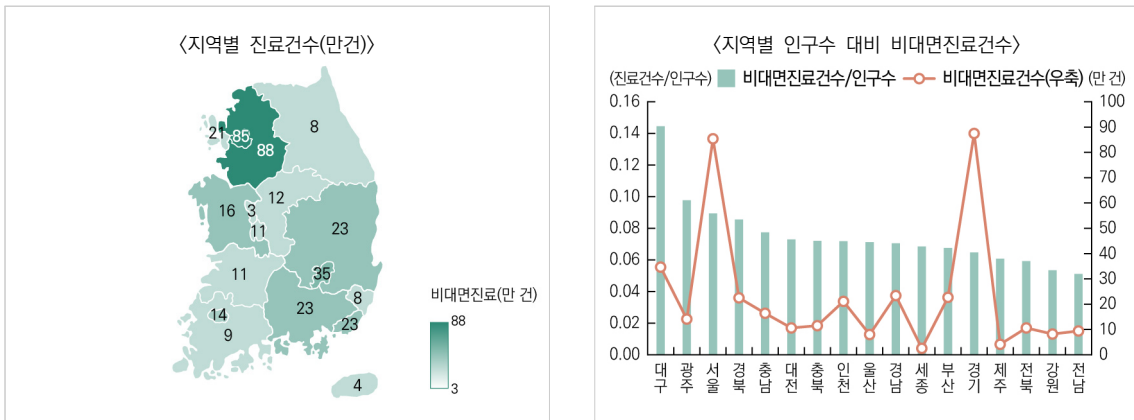


주: 2021년 7월 이후 최근 진료건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효(최대 3년)에 따라 미청구된 건이 있으므로 본 그래프 상에서는 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자료(2021.10.6.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3) 요양급여비용 청구시효는 3년이므로, 그 이전에만 청구하면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을 수 있음

-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조사기간(2020.2.1.~2021.9.6.) 중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지역과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 ▶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진료 이용건수는 대구 지역에서 월등히 높고, 광주, 서울, 경북 순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sup>14)</sup>

그림 1 지역별 비대면 진료 이용



주: 2020.2.1.~2021.9.6.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9월 6일까지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를 비교하였을 때, 건당 진료비, 다빈도질환, 의료기관 종별 이용비율, 시·도별, 연령별 이용 행태에 차이가 발생**

- 조사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건수는 389.3만건, 외래 전체의 진료건수는 12.6조건에 달함
- 비대면 진료비(건강보험공단 급여비와 본인부담금의 합계)는 조사기간동안 872.9억원, 외래 진료비는 59.0조 원으로 발생
- 비대면 진료의 다빈도질환은 만성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기관지염과 비염 등 간단한 문진으로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 대부분

14) 광주광역시외의 경우, 비대면진료건수는 여타도시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대구·경북 및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구수 대비 비대면진료건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는 지역별 비대면진료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나, 인구수(2021년 8월말 기준 1,353만명)가 월등히 많으므로 인구 수 대비 진료건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의 다빈도질환 순위<sup>1)</sup>

(단위: 만명)

순위	비대면 진료		외래 전체 <sup>2)</sup>	
	주상병명(주상병코드)	실환자수	주상병명(주상병코드)	실환자수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	25.6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1,140.4
2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8.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	733.7
3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5.3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9)	486.9
4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E785)	3.5	요통, 요추부(M5456)	460.6
5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K210)	3.4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J304)	449.8
6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9, F009)	2.8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K210)	4,346
7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J304)	2.4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4,271
8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E039)	2.2	급성 비인두염(J00)	3,658
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I639)	2.0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029)	3,427
10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E118)	2.0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J0390)	3,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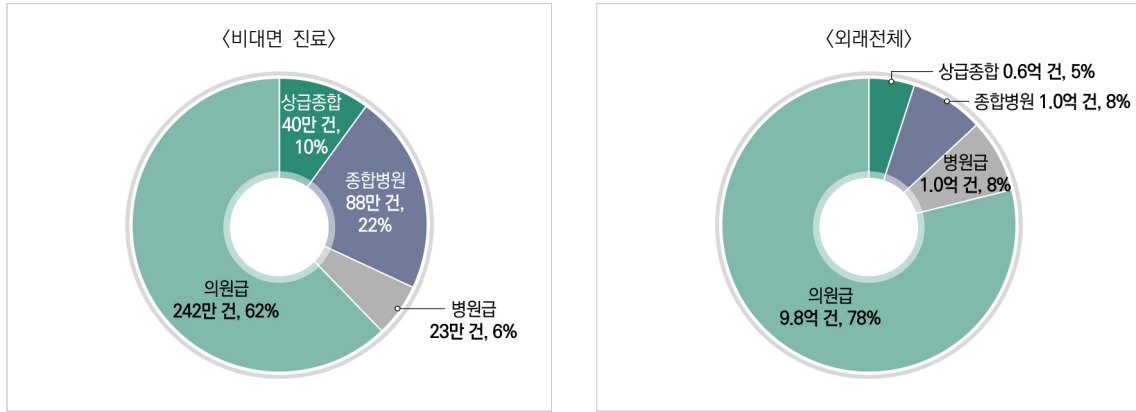
주 1) 2020.2.1.-2021.9.6. 기준

2) 외래 전체의 다빈도질환 순위 중 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치주염, 치은염 등의 치과질환은 순위에서 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외래 전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의 비대면 진료는 전체의 62%로 가장 높으나, 외래 전체의 의원급 이용률인 7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각각 10%과 22%로, 외래 전체의 해당 종별 의료기관 이용률(각각 5%, 8%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많은 의료인과 환자가 모이는 곳으로 여러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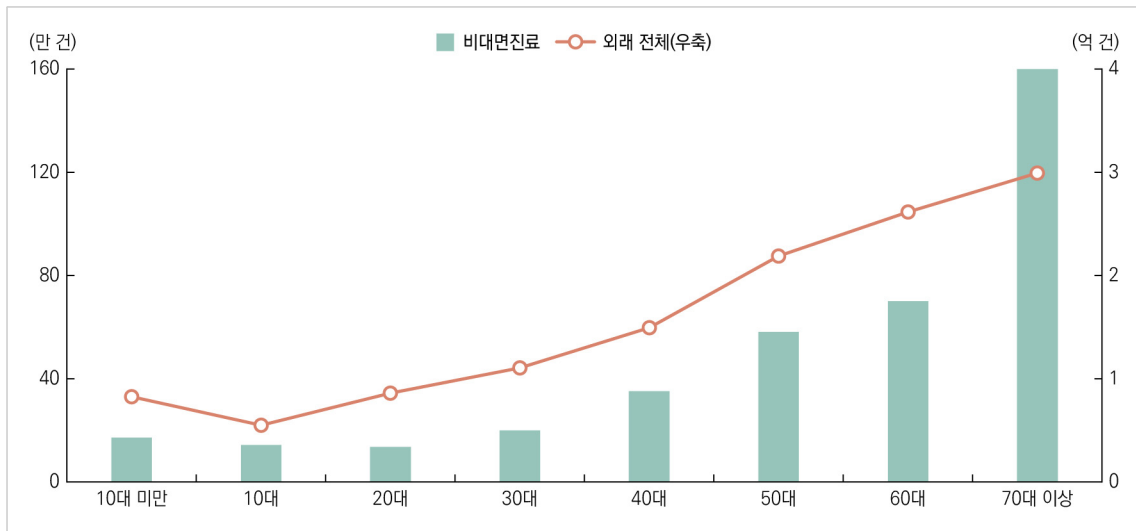
**그림 3** 의료기관 종별 이용비율 비교



주: 2020.2.1.~2021.9.6.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의 비대면 진료건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음
  - ▶ 70대 이상에서 비대면 진료건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림 4** 연령별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 비교



주: 2020.2.1.~2021.9.6.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우려와 의료이용 편의성에 따른 비대면 진료의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진 가능성, 진료의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 제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찬반논의 상존**

- 비대면 진료는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된다는 의견도 있음
- 보건의료단체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
  - ▶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하여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 제기
  - ▶ 지리적 제한을 넘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리적 접근성에 기초한 1차 의료에 대한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급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논쟁이 있음
  - ▶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을 위해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되,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 집중 방지와 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
-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

## [부록] OECD 회원국의 원격의료(telemedicine)<sup>15)</sup> 도입<sup>16)</sup>과 주요국의 시행 현황

### OECD 회원국 중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터키의 5개국을 제외한 33개국에서 원격의료 도입

- OECD 회원국 중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25개국에서는 원격의료의 합법화되어 시행
- 우리나라, 헝가리, 일본,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에서는 제한적 원격의료의 허용됨
  - ▶ 우리나라는 OECD에서 수행한 원격의료 시행 관련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보고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의료법」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위기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법에 명시되었으나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한 국가’의 카테고리에 포함
  - ▶ 헝가리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최종 진단을 하거나 중요한 치료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경우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에 제한을 두는 방식
  - ▶ 일본에서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었지만, 초진 시에는 대면진료를 원칙(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 허용)으로 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소재는 의사에 있음
  - ▶ 리투아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
-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원격의료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의료행위의 일부로 간주하여 가능

### [부표] OECD 회원국의 원격의료 시행 현황

분류	국가
원격의료가 법에 명시되어 허용된 국가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코스타리카,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한 국가	<b>대한민국<sup>1)</sup></b> , 헝가리, 일본,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원격의료는 가능한 국가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원격의료 미도입 국가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터키

주 1)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아 OECD의 보고서에서는 제외됨;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한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

자료: Tiago Cravo Oliveira Hashiguchi(2020), "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16. 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5) OECD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원격모니터링, 임상데이터 저장 및 전송, 양방향·실시간 비대면 진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16) Tiago Cravo Oliveira Hashiguchi(2020), 위 보고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권장**

- 미국은 1997년부터 연방정부의 메디케어(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공적의료보험)와 주정부 주도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공적의료보험) 등 공공 보험 프로그램에서 원격의료를 보장(보험급여 제공)<sup>17)</sup>
  - ▶ 메디케어는 의사와 환자 간 양방향·실시간 진료만 허용하되, 서비스제공 장소를 제한함(농촌지역, 노인요양 시설, 말기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가정 등)
  - ▶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는 메디케이드를 통해 원격의료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대상자, 의료분쟁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여부, 보험적용여부, 전자처방전 발급 비용 등은 각 주마다 상이
  - ▶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보험청(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서는 메디케어의 원격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요건 면제, 원격의료 장소 제한 폐지를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sup>18)</sup>
- 프랑스는 2010년에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5년부터 시범사업 시행한 후 201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sup>19)</sup>
  - ▶ 프랑스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17세 이상,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주치의가 있는 경우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진료 과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장기요양환자, 임신부, 차상위계층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진료비는 무료
  - ▶ 코로나19 확산 이후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70세 이상 혹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 대하여 원격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시행
- 일본은 1997년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원격의료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20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허용<sup>20)</sup>
  - ▶ 일본에서는 재진환자와 만성질환 환자에 한하여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하며 온라인 진료 혹은 화상전화, 전자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진료가 가능
  - ▶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진환자도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질환도 기존의 만성질환자에서 폐렴, 알러지를 앓고 있는 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영국은 2008년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2017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영국 전역으로 시행 확대<sup>21)</sup>

17) 미국 보건복지부(HHS)(방문일: 2021.10.16.), (<https://telehealth.hhs.gov/patients/understanding-telehealth/>)

18)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방문일: 2021.10.16.),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telehealth.html>)

19) 프랑스 보건청(HAS, Haute Autorité de Santé)(방문일: 2021.10.14.), ([https://www.has-sante.fr/jcms/c\\_2971632/fr/teleconsultation-et-teleexpertise-guide-de-bonnes-pratiques](https://www.has-sante.fr/jcms/c_2971632/fr/teleconsultation-et-teleexpertise-guide-de-bonnes-pratiques)); ([https://www.has-sante.fr/jcms/p\\_3168867/fr/reponses-rapides-dans-le-cadre-du-covid-19-teleconsultation-et-telesoin](https://www.has-sante.fr/jcms/p_3168867/fr/reponses-rapides-dans-le-cadre-du-covid-19-teleconsultation-et-telesoin))

20) 일본 후생노동성(JHPN), (방문일: 2021.10.14.), (<http://japanhpn.org/en/ict-home-2/>)

- ▶ 2017년부터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상담, 전자처방전 발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웨어러블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면, 의사는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 ▶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환자 간 온라인상담 및 화상상담을 영국 전역에서 허용하였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24시간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부표] 주요국 원격의료 시행 및 코로나19 대응 현황**

국가	원격의료 시행 현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한시적 확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디케어) 의사-환자 간 양방향·실시간 원격의료만 허용</li> <li>• (메디케이드) 원격의료는 주정부 주도로 시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 범위, 보험적용여부, 처방전 발급 비용은 각 주의 정책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격의료 제공 서비스 확대(치료비 부담요건 면제)</li> <li>• 장소의 제한을 없앴(기존 농촌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li> <li>•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료정보보호법 일부 예외 적용</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대상을 일부 제한하여 시행(16세 이하, 응급상황, 주치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li> <li>•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 70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의료를 적극 권장</li> <li>•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원격의료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진환자,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진환자는 대면진료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 이용 가능</li> <li>• 대상 질환 확대(만성질환→만성질환, 폐렴, 알러지)</li> <li>• 택배로 처방약 배송 가능</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에 일부 지역에서 원격모니터링, 온라인상담, 24시간 응급전화상담 가능</li> <li>• 202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및 화상상담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행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시행(2021년 예정)</li> <li>• 온라인진료, 전화진료 및 반복처방 가능</li> <li>• 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 대해 24시간 긴급 의료상담 전화 가능</li> </ul>

자료: 미국 보형청(CMS),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프랑스 보건청(HAS), 일본 후생노동성(JHPN), 영국 보건부(DHSC)

21) 영국 보건부(DHSC), <방문일: 2021.10.1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igital-health-working-in-partnership/the-uk-pioneering-digital-health-solutions>);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2021)'Direct and Indirect health impacts of COVID-19 in England,' 2021.9.17.

#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소개: 호주

정재호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3)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기 재정여건을 전망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

- 재정전망 동향 시리즈에서는 우리나라 중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사례를 소개

호주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의 재무부는 2021년 5월에 5년(FY2020~FY2024)의 기간에 대한 경제·재정전망 보고서 「Budget Strategy and Outlook」을 발표<sup>1)</sup>

## 1. 경제전망(FY2020~FY2022)<sup>2)</sup>

- 호주연방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해외 출입국 제한, 고강도 거리두리 시행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등에 따라 여러 경제 지표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sup>3)</sup>
  - ▶ 전망기간 동안 실질GDP 성장률은 2.7%, 경상GDP 성장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및 호주연방은 대응 정책 시행 등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2.5% 수준으로 전망
  - ▶ 실업률은 FY2019년에는 6.9%를 기록하였지만,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22년에는 4.8%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같은 기간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연평균 증가율 1.7%)

1) 경제·재정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0회계연도(FY2020)는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의 기간을 의미

2) 「Budget Strategy and Outlook」에서 경제전망 결과는 FY2022년까지 제시되어 있고, 재정전망은 FY2024년까지 제공하고 있음

3)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2021년 10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에서도 호주연방의 경제활동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21년 호주연방의 GDP 성장률을 3.5%로 전망하였음

표 1 경제전망 결과

구분	FY2019 <sup>1)</sup>	FY2020	FY2021	FY2022	FY2020-FY2022 연평균 증가율
실질GDP 성장률	△0.2	1.3	4.3	2.5	2.7
경상GDP 성장률	1.7	3.8	3.5	2.0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0.3	3.5	1.8	2.3	2.5
실업률(%)	6.9	5.5	5.0	4.8	5.1
임금 상승률	1.8	1.3	1.5	2.3	1.7

주1): FY2019년은 확정값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strategy and outlook」(2021.05)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 2. 재정전망(FY2020~FY2024)

### 가. 일반정부 수입(General Government Receipts)

일반정부 수입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FY2022년부터 증가 전망

- 일반정부 수입의 50%를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감소함에 따른 실업률 하락 및 경기 회복과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년 6.1%씩 증가해 FY2024년에는 2,618억 호주달러로 전망
- 일반정부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법인세는 철광석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광물자원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sup>4)</sup>됨에 따라 FY2022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수입의 지속적 증가로 FY2024년에는 1,005억 호주달러로 전망
- 재산세 수입은 호주연방의 저소득층 대상 사회주택 공급 확대, 신규주택 구입자 대상 보조금 지급제도(홈빌더, Home Builder) 시행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24년에는 824억 호주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 소비세·관세 수입은 실업률 감소 및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주류, 담배 등의 소비량이 증가로 FY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24년에는 474억 호주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4) 2021년 9월 호주연방의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에서 공개한 「Resources and Energy Quarterly」에서는 중국 내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철광석 수요 감소 및 중국과 호주 간 분쟁 등의 영향으로 \$150/톤(2021년 9월 기준) 수준의 철광석 가격이 2022년 12월에는 \$93/톤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표 2 일반정부 수입 전망

(단위: 10억 호주달러, %)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0-FY2024 연평균 증가율	
<b>일반정부 수입</b>	499.8	482.1	494.0	532.9	572.0	3.4	
소득세	개인소득세	228.0	219.4	236.6	256.8	261.8	3.5
	법인세	93.3	82.3	70.4	81.0	100.5	1.9
	기타	16.4	20.2	19.7	20.6	21.7	7.3
간접세	재산세	69.8	71.9	75.2	78.6	82.4	4.2
	소비세·관세	42.8	43.3	43.4	45.0	47.4	2.6
	기타	9.2	8.5	10.1	11.2	11.5	5.7
세외수입	40.4	36.5	38.7	39.7	46.6	3.6	
<b>일반정부 수입(GDP 대비)</b>	11.1	10.3	10.9	11.3	10.9	-	
소득세	개인소득세	4.5	3.9	3.2	3.6	4.2	-
	법인세	0.8	0.9	0.9	0.9	0.9	-
	기타	3.4	3.4	3.5	3.5	3.4	-
간접세	재산세	2.1	2.0	2.0	2.0	2.0	-
	소비세·관세	0.4	0.4	0.5	0.5	0.5	-
	기타	2.0	1.7	1.8	1.7	1.9	-
세외수입	0.4	0.4	0.5	0.5	0.5	-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strategy and outlook」(2021.05)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 나. 일반정부 지출(General Government Sector Expenses)

### 사회보장·복지 지출은 FY2021년에는 전년 대비 6.8% 감소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일반정부 지출의 약 34%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출(실업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은 실업자수 감소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감소로 FY2021년에는 전년 대비 6.8% 감소한 2,100억 호주달러로 전망하였고, 이후 노령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노령연금 지출 증가로 FY2024년에는 2,245억 호주달러로 전망

### 코로나19 대응 정책 종료에 따라 보건, 경제 분야 지출은 FY2022년까지 감소 전망

- 일반정부 지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보건 지출(의료보장, 주정부 소유 공공병원<sup>5)</sup> 지원금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FY2022년부터 공공병원 지원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출이 감소해 FY2024년에는 1,032억 호주달러로 전망
- 경제 분야 지출은 관광·지역개발, 직업훈련, 국제이주 및 기타 경제 분야 지출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던 FY2018년에는 경제 분야지출이 일반정부 지출 4,870억 호주달러의 약 2% 수준인 100억 호주 달러였으나,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FY2019년부터 경제 분야 지출 중 기타 경제 분야(Other Economic Affairs) 지출이 증가

5) 「Report on Government Services 2021」(2021.1.28.)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공공병원 수는 692개소

**교육, 국방, 교통·통신, 연료·에너지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일반 공공서비스 지출은 감소 전망**

- 교육 지출(공립·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 고등교육 지원금 등)은 도시 외 지역 거주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활성화 관련 지출 증가, 공립·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2018년부터 시작된 ‘Quality School’ 정책에 따른 지원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9% 증가 전망
- 국방 지출은 인도·태평양 국가 간 군사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국방 백서」 및 「2020 국방 구조 계획」 등에 따라 매년 5.1% 증가해 FY2024년에는 407억 호주달러로 전망
- 교통·통신 분야 지출(통신 지원, 철도·항공·해상 등 대중교통 지원)은 국가브로드밴드통신망 계획에 따른 북부지역 네트워크 시설 공사, 시드니 등 도심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교통망 구축 및 지하철 노선 확대 등의 영향으로 FY2022년까지 증가 예정
- 연료·에너지 지출은 호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확대에 따라 지출규모가 매년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일반 공공서비스 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 부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금과 R&D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정부 지출 개편 영향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24년에는 258억 호주달러로 전망

**표 3 일반정부 지출 전망**

(단위: 10억 호주달러, %)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0-FY2024 연평균 증가율
일반정부 지출	659.4	589.3	595.4	614.7	633.7	△1.0
사회보장·복지	225.4	210.0	214.7	219.0	224.5	△0.1
보건	94.5	98.3	95.8	99.3	103.2	2.2
경제	83.8	14.6	11.1	10.1	10.1	△41.1
교육	42.6	42.8	43.5	44.6	46.0	1.9
국방	33.4	34.5	36.5	38.3	40.7	5.1
일반 공공서비스	33.0	26.1	24.8	25.1	25.8	△6.0
교통·통신	13.8	14.5	17.6	16.4	13.3	△0.9
연료·에너지	9.1	9.6	9.5	10.1	10.6	3.9
기타 <sup>1)</sup>	123.8	139.0	141.9	151.6	159.5	6.5
일반정부 지출(GDP 대비)	32.0	27.6	27.4	27.0	26.4	-
사회보장·복지	10.9	9.8	9.9	9.6	9.4	-
보건	4.6	4.6	4.4	4.4	4.3	-
경제	4.1	0.7	0.5	0.4	0.4	-
교육	2.1	2.0	2.0	2.0	1.9	-
국방	1.6	1.6	1.7	1.7	1.7	-
일반 공공서비스	1.6	1.2	1.1	1.1	1.1	-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0-FY2024 연평균 증가율
교통·통신	0.7	0.7	0.8	0.7	0.6	-
연료·에너지	0.4	0.5	0.4	0.4	0.4	-
기타	6.0	6.5	6.5	6.7	6.6	-

1) 기타: 주거·지역사회시설, 공공질서·안전, 여가·문화, 광업·제조업·건설업, 농림어업, 그 외 기타 등을 포함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strategy and outlook」(2021.05)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 다. 부채

- 전망기간 동안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24년에는 9,806억 호주달러(GDP 대비 비율 40.9%)로 전망
  - ▶ 호주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sup>6)</sup>,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sup>7)</sup> 등은 코로나19 이전 호주의 GDP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GDP대비 부채 비율 증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

표 4 부채 전망

(단위: 10억 호주달러, %)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0-FY2024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지	△159.6	△107.2	△101.4	△81.8	△61.7	△21.1
재정수지(GDP 대비)	△7.5	△4.3	△4.1	△3.1	△2.3	-
부채	617.5	729.0	835.0	920.4	980.6	-
부채(GDP 대비)	24.7	30.0	34.2	38.4	40.9	-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strategy and outlook」(2021.05)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6) 「Monetary Policy in 2020」(Reserve Bank of Australia, 2020.11)

7) 「A Future with High Public Debt: Low-for-Long Is Not Low Forever」(IMFBlog, 2021.04)

#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 - 캐나다편 -

이 미 연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1)

이번 호는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시리즈의 네 번째 순서로, 1927년에 공적연금을 도입한 이후로 성공적인 연금개혁으로 재정안정성 및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

### 1.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

#### 가. 도입기

- 캐나다 공적연금제도의 시작은 1908년 「캐나다 정부연금법(the Canadian government annuities act)」 제정 및 시행
- 1927년 현행 기초연금(old age security)의 전신인 노령연금(old age pension)을 도입하였고,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권을 부여
  - ▶ 캐나다에 20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지급
  - ▶ 자산조사의 대상은 연금, 자산소득, 비금전적인 혜택 등이고 연간 소득이 350 캐나다 달러(이하 “달러”) 미만인 경우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으며, 완전 노령연금액은 월 20 달러(연간 240 달러)

#### 나. 확대기

- 1930년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노인빈곤이 지속되면서 1952년에 기존 노령연금을 보편적인 연금 제도인 기초연금(old age security)으로 확대
  - ▶ 자산조사 없이 70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월 40 달러를 지급
  - ▶ 노령부조(old age assistance)도 함께 도입되었는데 65~69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40 달러를 지급하였고 1970년대 기초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운영
- 1965년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인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이하 ‘국민연금’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기간의 평균 월 소득의 25%를 보장
- 보충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는 1967년에 국민연금을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되었

으나 1970년대에 공적연금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현재까지 운영 중

- ▶ 국민연금이 1966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가입기회를 갖지 못했던 노인 인구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노인 빈곤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도 운영 중
- ▶ 보충연금은 소득조사를 통해 소득 1 달러 증가 시 연금액을 0.5 달러씩 감액하여 지급
-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국민연금을 거부하고 동일한 성격의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퀘백주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퀘백연금제도(Quebec pension plan)를 도입하여 운영 중
- 국민연금 도입 이후 1970~80년대까지는 연금급여가 매년 생활비 수준에 따라 인상되고 유족에게 동일한 연금액을 보장하며, 장애연금액을 인상하는 등 연금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짐

## 다. 축소기

- 1980년대에 들어서자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기초연금 급여환수제도(clawback)를 1989년에 도입하여 연간 소득이 50,000 달러 이상인 경우 1 달러 당 15센트를 감액하였으나, 다수의 노인들은 이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 개혁 효과는 다소 미미
  - ▶ 1990년대의 물가상승률, 소득증가율이 높지 않아 기초연금 급여환수제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2001년까지 노인 인구의 5% 미만에 불과
- 1995년 제15차 국민연금 재정보고서에서 20년 후에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결과를 내놓자, 1998년에 정부는 캐나다연금의 적립을 강화하고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본격적인 연금개혁을 실시
  - ▶ 국민연금의 지급준비금으로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조정하였고 보험료율을 1996년 5.6%에서 2003년까지 9.9%로 인상

표 1 캐나다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변화

년도	주요 내용
1927	노령연금 도입으로 캐나다에 20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의 영국인에게 지급
1952	연방정부가 재원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수당형태의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캐나다에 20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
1966	국민연금과 퀘백연금을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
1967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보충연금 도입 및 시행
1987	국민연금 제도의 확대: 60세에 유연퇴직급여 수급가능, 장애급여 상향 조정, 유족배우자가 재혼할 경우에도 유족급여 지속 수급 가능 등
1989	기초연금 급여환수제도(clawback) 도입
1998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에서 부분정립방식으로 전환, 보험료 인상, 새로운 투자 정책 도입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6),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 2.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 개혁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수익극대화(중점을 둔 1998년 개혁,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 인상을 동반한 2016년 연금개혁을 소개<sup>1)</sup>)

### 가. 1998년 개혁

#### (1) 개혁의 배경

향후 예상되는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위기를 방지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연금개혁 단행

-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의 변화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후세대 부담증가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직면
  - ▶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201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으로 인해 향후 연금지출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보험료율이 1996년 5.6%에서 2016년 10.1%, 2030년 14.2%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
-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적립기금은 201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될 당시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자율이 1960년대의 2.4%에서 1980년대의 6% 이상으로 상승하여 부과방식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장점으로 평가되지 않았음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재정방식을 기존의 부과방식에서 부분적립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실시

#### (2) 주요 개혁내용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기존의 부과방식에서 부분적립방식(steady-state funding system)으로 재정운영방식을 전환하고 보험료율 인상

- 1966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의 재정운영방식은 3.6%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의 변화로 2015년 재정고갈이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1998년에 부분적립방식으로 전환
  - ▶ 부과방식은 각 시점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소요분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를 매년 각출하는 방식이고, 고령화가 진전되거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음
  - ▶ 부분적립방식은 가입자의 미래연금비용, 퇴직률, 사망률 등을 고려하여 보험수리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고 미래 급여지출에 필요한 준비금의 일부를 미리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
- 재정운영방식의 전환으로 보험료율을 1997년 6%에서 2003년 9.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후 동결하기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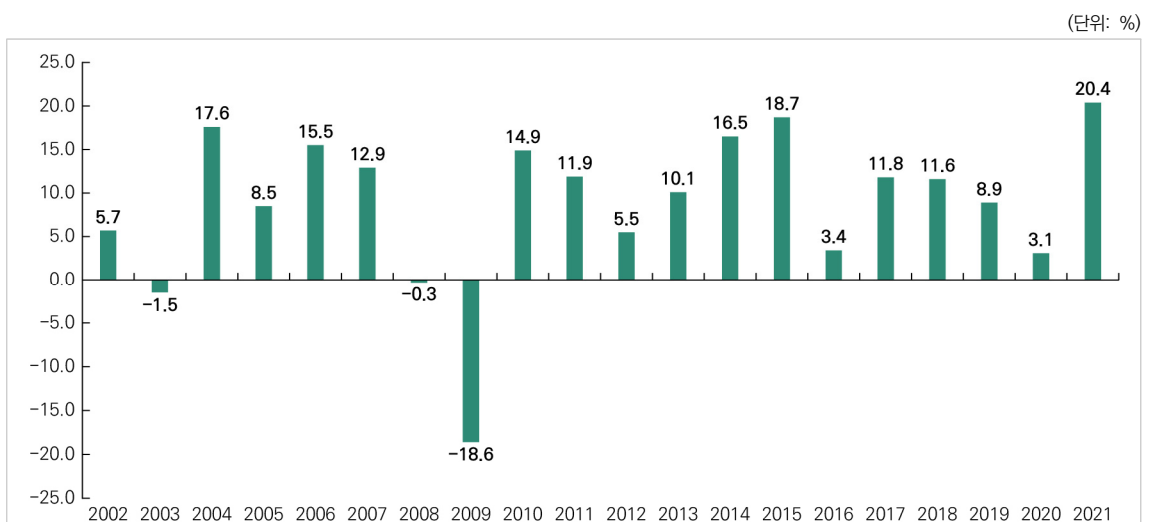
1) 국민연금공단(2019)의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김원섭(2019)의 「주요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요건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 부과방식을 유지하였을 경우, 보험료율은 1998년 6.10%에서 2003년 7.35%, 2030년 14.2%로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1998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2003년 9.9%까지 6년 안에 인상시키고 2030년까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재정추계기간인 향후 75년 동안 적립금 규모를 적립배율의 2배를 유지한다는 재정목표를 5~6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계산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 ▶ 적립배율(assets/expenditure ratio)은 특정 연도 초기 적립금이 해당 연도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보험료를 인상으로 연금기금이 상당한 규모로 적립되었고, 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할 독립적인 전문기구로 캐나다 국민연금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를 설립**

- 국민연금투자위원회는 캐나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자 세계 10대 연금 중 한 곳으로 운용자산은 2021년 6월 기준 5,196억 달러(약 492조원) 규모
- 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투자위원회는 투자계획 및 전략 등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이사 선임 시 정부기관 출신의 인사는 후보에서부터 배제됨
- 법적으로 국민연금투자위원회의 의무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관계없이 연금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21년 회계연도 기준 10년 누적 평균 수익률은 11.0%
  - ▶ 2020-21년 회계연도에 20.4% 수익률을 기록, 839억 달러(약 79조원)의 수익을 창출

**그림 1** 캐나다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



자료: 캐나다 국민연금투자위원회(<https://www.cppinvestments.com>)의 각 연도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 나. 2016년 개혁

### (1) 개혁의 배경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노후소득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인구구조와 연금재정을 바탕으로 2016년 6월 공적연금의 기능강화를 위한 개혁을 실시

- 2016년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보다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의 노후소득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캐나다는 노인부양비가 낮고 출산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인구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국민연금의 재정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건전한 상태여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할 수 있었음

### (2) 주요 개혁내용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으로 노후소득을 증가시키고,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인상

-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2018년 25%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 33%까지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은 2018년 9.9%에서 2023년 11.9%로 단계적 인상 추진 중
  - ▶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장려세제와 소득공제혜택 등의 대책도 마련
  - ▶ 소득공제혜택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2021년 기준 최대 2,875.95 달러를 한도로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

증가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완전적립방식의 ‘추가 국민연금’으로 구분·관리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도 고려

- 2016년 연금개혁 이후 발간한 제28차 재정계산 보고서는 기존의 부분적립방식 적립배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보험료율을 기본 국민연금(Base CPP, 9.9% 보험료율), 추가 국민연금(Additional CPP, 2.2% 추가 보험료율)에 적용하여 평가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23년부터 2029년 사이에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

-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2010년 470만 명에서 2030년에는 930만 명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액이 365억 달러에서 1,0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급여 수급기간은 길어지고 캐나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으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수 대비 연금수급자 수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



- 이에 연방정부는 기초연금과 보충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23년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조정하기로 발표하였고, 연간 108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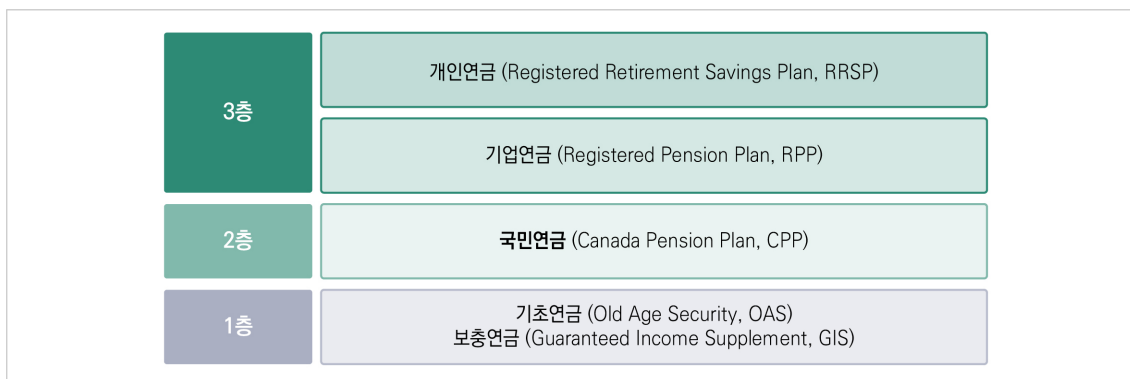
### 3. 캐나다 공적연금제도 개요 및 현황

캐나다 공적연금제도의 도입, 발전, 연금개혁의 결과로 운영되고 있는 2021년 현재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현황을 살펴보기로 함

#### 가. 연금제도 개요<sup>2)</sup>

- 캐나다의 연금제도는 보충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으로 구성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이고, 공적연금에는 보충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해당함
  - ▶ 0층에 위치하는 보충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연간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
  - ▶ 1층에는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위치하며 거주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에 완전연금액을 지급
  - ▶ 2층은 국민연금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18~70세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2020년 기준 소득의 10.5%(기본 국민연금 4.95% 씩, 추가 국민연금 0.3% 씩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
  - ▶ 3층에는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등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연금이 위치하고, 기업연금의 경우 연방 또는 주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음

그림 2 캐나다 연금제도 구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2) 김원섭(2019)의 「주요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요건에 관한 연구」, 홍원구(2021)의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보충연금) 소득조사를 바탕으로 수급자를 선별하며, 소득조사 대상에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이 포함되고 기초연금과 각종 수당 및 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 ▶ 2020년 10~12월 기준 독신 노인의 경우 연간 소득이 18,624 달러(약 1,640만원) 미만이어야 보충연금 수급대상이 됨
- (기초연금) 연령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는 수당방식의 연금이며,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제도를 운영 중
  - ▶ 2020년 기준 연간 소득이 79,054 달러(약 6,96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의 15%를 환수하고, 연간 소득이 128,149 달러(약 1억 1,280만원) 이상이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참고] 기초연금 감액 예시**

- 2020년 연간 소득이 95,000 달러인 경우, 기초연금 기준소득인 79,054 달러 대비 15,946 달러 초과
- 초과분 15,946 달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2,392 달러)을 감액
- 2020년 기준 기초연금(완전연금 기준) 월 614.14 달러에서 199.33 달러(=2,392 달러 ÷ 12개월)를 제외한 414.81 달러를 받게 됨

-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이고, 연간 소득이 3,500 달러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
  - ▶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에 상한(Yearly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MPE)이 존재하며, 2020년 기준 58,700 달러(약 5,170만원)
  - ▶ 다만, 상한 소득에서 3,500 달러를 공제하므로 실제 보험료가 부과되는 최대 소득은 55,200 달러(약 4,860만원)
  - ▶ 2003년 이후 보험료율은 9.9%(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95% 부담,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 개혁으로 2023년까지 11.9% 인상할 계획(2020년 기준 10.5%)

**표 2 국민연금 보험료: 2020년 기준**

(단위: 달러, 원)

보험료 부과 최대 상한 소득(연간)	기본 공제액	실질 보험료 부과 최대 상한 소득(연간)	보험료율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	자영업자 보험료
58,700 (51,691,483)	3,500 (3,082,116)	55,200 (48,609,367)	사용자 등: 5.25% 자영업자: 10.5%	2,898 (2,551,992)	5,796 (5,103,984)

주: 괄호()의 숫자는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적용한 환율은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준 환율(880.60원)  
 자료: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데이터베이스(<http://open.canada.ca/data/en/dataset>) 검색결과 활용하여 작성

## 나. 공적연금제도 현황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기준 14,886,954명이고,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을 포함한 수급자 수는 12,481,460명

- 캐나다의 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38,033,014명<sup>3)</sup>,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0년 18.1%로 추정<sup>4)</sup>되며 보험료 납부 없이 100%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2019년 기준 6,434,723명
-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2019년 기준 14,886,954명이고, 수급자 수는 6,046,737명

표 3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현황: 2015~2019년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초연금(수급자, a)	5,673,626	5,834,106	6,016,428	6,227,217	6,434,723	
보충연금	1,646,678	1,709,532	1,774,783	1,831,332	1,895,296	
국민연금	가입자	14,017,051	14,093,418	14,284,101	14,585,230	14,886,954
	수급자(b)	5,441,696	5,602,693	5,754,963	5,902,929	6,046,737
공적연금 수급자 수(=a+b)	11,115,322	11,436,799	11,771,391	12,130,146	12,481,460	

자료: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데이터베이스(<http://open.canada.ca/data/en/dataset>) 검색결과 활용하여 작성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2015년 450억 4,600만 달러(39조 8,207억원)에서 2019년 561억 4,200만 달러(49조 2,239억원)로 연평균 5.7% 증가

표 4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2015~2019년

(단위: 백만 달러,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증가율
연금보험료 수입	45,046 (398,207)	46,119 (402,383)	48,452 (421,339)	51,184 (433,324)	56,142 (492,239)	5.7%

주: 괄호()의 숫자는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적용한 환율은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환율(1 캐나다 달러는 2015년 884.00원, 2016년 872.49원, 2017년 869.60원, 2018년 846.60원, 2019년 876.77원, 2020년 880.60원)

자료: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데이터베이스(<http://open.canada.ca/data/en/dataset>) 검색결과 활용하여 작성

3)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https://www.statcan.ca>

4) 통계청(<http://kosis.kr>)에서 제공하는 OECD 국가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를 참고

**기초연금, 보충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지출규모는 2019년 기준 1,051억 7,100만 달러(92조 2,113억원)**

- 기초연금 지출액은 2015년 454억 8,500만 달러(40조 2,085억원)에서 2019년 562억 7,000만 달러(49조 3,362억원)으로 증가
- 국민연금 지출액은 2015~2019년 동안 연평균 4.7% 증가하여 2019년 489억 100만 달러, 원화로 42조 8,751억원에 이릅니다

**표 5 공적연금 지출규모 : 2015~2019년**

(단위: 백만 달러,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증가율
기초연금	45,485 (402,085)	48,202 (420,556)	50,613 (440,132)	53,391 (452,011)	56,270 (493,362)	5.5%
보충연금	9,922 (87,707)	10,922 (95,297)	11,659 (101,383)	12,405 (105,018)	13,008 (114,050)	7.0%
국민연금	40,754 (360,265)	42,502 (370,826)	44,460 (386,627)	46,542 (394,025)	48,901 (428,751)	4.7%
합계	86,239 (762,350)	90,704 (791,381)	95,074 (826,759)	99,933 (846,036)	105,171 (922,113)	5.1%

주: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괄호()의 숫자는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적용한 환율은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환율(1 캐나다 달러는 2015년 884.00원, 2016년 872.49원, 2017년 869.60원, 2018년 846.60원, 2019년 876.77원, 2020년 880.60원)  
 자료: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데이터베이스(<http://open.canada.ca/data/en/dataset>) 검색결과 활용하여 작성

**기초연금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15년 514.82 달러(455,097원), 2019년 553.07 달러(484,921원)로 연평균 1.8% 증가**

- 기초연금 완전연금액(2019년 기준 614.14 달러)<sup>5)</sup>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1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1년에 4번 급여가 연동되는 방식 적용

**표 6 기초연금 1인당 월평균 지급액: 2015~2019년**

(단위: 달러,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증가율
기초연금	514.82 (455,097)	524.92 (457,986)	532.01 (462,639)	540.96 (457,977)	553.07 (484,921)	1.8%

주: 괄호()의 숫자는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적용한 환율은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환율(1 캐나다 달러는 2015년 884.00원, 2016년 872.49원, 2017년 869.60원, 2018년 846.60원, 2019년 876.77원, 2020년 880.60원)  
 자료: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데이터베이스(<http://open.canada.ca/data/en/dataset>) 검색결과 활용하여 작성

5) 캐나다에 4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완전연금액이 지급되고, 40년 미만이면 매년 1/40씩 감액하여 지급

**[참고] 기초연금 물가연동지수(분기별로 적용)**

- 최근 3개월간(the most recent 3-month)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지난 3개월간(the last 3-month)<sup>6)</sup>의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 변화
- 2019년 4분기의 기초연금 물가연동지수 계산 예시  

$$\frac{2019년\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지수\ 평균}{2019년\ 2월,\ 3월,\ 4월\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frac{(136.6 + 136.3 + 137.0) \div 3}{(134.5 + 135.4 + 136.0) \div 3} = \frac{136.6}{135.3} = 1.00985$$
- 물가연동지수 = 0.985%
- 다만, 최근 3개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감소하여 음의 값이 나오더라도 기초연금법에 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금액과 동일하게 유지

**국민연금의 1인당 월지급액은 2015년 624.10 달러(551,705원), 2019년 673.93 달러 (590,885원)로 연평균 1.9% 증가**

- 국민연금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동되며, 차이점은 1년 단위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12개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

**표 7 국민연금 1인당 월지급액: 2015~2019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증가율
국민연금	624.10 (551,705)	632.17 (551,559)	643.80 (559,846)	657.05 (556,256)	673.93 (590,885)	1.9%

주: 괄호()의 숫자는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적용한 환율은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환율(1 캐나다 달러는 2015년 884.00원, 2016년 872.49원, 2017년 869.60원, 2018년 846.60원, 2019년 876.77원, 2020년 880.60원)

자료: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데이터베이스(<http://open.canada.ca/data/en/dataset>) 검색결과 활용하여 작성

**다. 국민연금의 재정목표와 평가지표<sup>7)</sup>**

**캐나다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는 현재 보험료율 하에 향후 75년간 일정수준의 적립배율을 유지하는 것이고, 3년 마다 향후 75년에 대한 재정계산을 통해 산출한 적립배율 등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점검**

분기	최근 3개월	지난 3개월
1분기(1월~3월)	지난 연도의 8월~10월	지난 연도의 5월~7월
2분기(4월~6월)	지난 연도의 11월~올해 1월	지난 연도의 8월~10월
3분기(7월~9월)	올해 2월~4월	지난 연도의 11월~올해 1월
4분기(10월~12월)	올해 5월~7월	올해 2월~4월

자료: [http://lop.parl.ca/sites/PublicWebsite/default/en\\_CA/ResearchPublications/201174E](http://lop.parl.ca/sites/PublicWebsite/default/en_CA/ResearchPublications/201174E)

7) 정인영(2019)의 '캐나다 공적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46, No.1)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는 향후 75년간 매년 5~6배의 적립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보험료율을 최대한 낮추거나 상한 9.9%를 초과하지 않는 것
  - ▶ 재정계산 결과에서 적립배율 5~6배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현재 보험료율보다 낮을 경우 향후 급여지출에 대한 지불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반대로 높게 나온다면 지불능력이 부족한 것이므로 연금급여 하향 조정 또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적립배율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재정상태표(balance sheet)을 작성
  - ▶ 구체적인 지표는 자산(asset), 계리적 부채(actuarial liability), 자산 초과 및 부족(asset excess or shortfall), 부채 대비 자산비율(assets as percentage of liability)로 총 4가지
  - ▶ (자산) 현재와 미래 가입자에게 장래에 걸쳐 발생할 보험료 납부 총액의 현재가치와 평가연도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
  - ▶ (계리적 부채) 현재와 미래 수급자에게 장래에 걸쳐 발생할 급여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 (자산 초과 및 부족) 자산에서 계리적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현재와 미래의 가입자 및 수급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수급하게 될 급여액이 반영된 값
  - ▶ (부채 대비 자산 비율) 이 비율이 100% 이상이라면 지출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안정적인 재정상태로 평가

**[참고] 재정상태 지표: 자산 초과 및 부족(asset excess or shortfall)**

재정평가기간인 75년 동안에 발생하는 미래 보험료 수입의 현재가치와 현재 적립금을 합한 자산(asset)에서 계리적 부채, 즉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지출 총액의 현재가치를 제외

$$AE = \left\{ \sum_{y=1}^Y I_y \times pv_y + F_0 \right\} - \sum_{y=1}^Y C_y \times pv_y$$

AE : 자산 초과 또는 자산 부족                      I<sub>y</sub> : 수입  
 F<sub>0</sub> : 연초 적립기금                                      C<sub>y</sub> : 지출  
 pv<sub>y</sub> : 할인율    y : 연도 (1 ≤ y ≤ Y)  
 Y : 추계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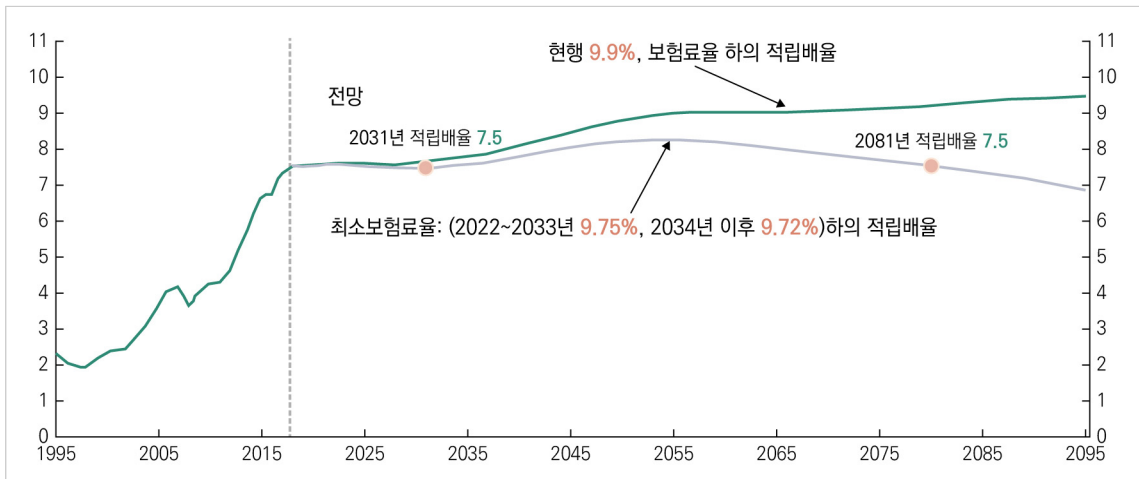
#### 4. 공적연금개혁의 성과와 한계

캐나다는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75년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발표한 국민연금 제30차 재정추계결과 적립배율이 2019년 7.5배에서 점차 증가하여 2095년 9.5배로 전망

- 추계기간 말 재정목표인 5배~6배 적립배율(assets/expenditure ratio)을 초과하여 연금지급에 대한 지불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 ▶ 최소보험료율은 2022~2033년 기간 동안에는 9.75%, 2034년 이후에는 9.7%로 현행 보험료율 9.9% 보다 낮아 향후 급여지출을 위한 지불능력을 갖춘 상태
  - ▶ 적립배율은 2019년 7.5배에서 점차 증가하여 2095년에는 현행 9.9% 보험료율 하에서는 9.5배에 달하고, 최소보험료율 하에서는 2095년 6.8배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다만, 재정목표가 추계기간 말 5~6배의 적립배율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최소보험료율 하에서도 재정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보험료율 인하도 가능한 재정상태로 평가

그림 3 캐나다 국민연금의 향후 적립배율 전망 결과



자료: 캐나다(2019), 「30th Actuarial Report Canada Pension Plan」

- 재정상태표에서도 부채 대비 자산비율이 2018년과 2030년에 모두 100% 이상을 보여 현재 및 미래의 국민연금 재정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 ▶ 2018년 기준 자산은 2조 6,911억 달러, 계리적 부채는 2조 6,744억 달러로 자산초과 규모는 16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부채 대비 자산비율은 100.6%
  - ▶ 2030년 기준 자산은 4조 1,269억 달러, 계리적 부채는 4조 1,071억 달러로 자산초과 규모는 197억 달러로 전망되었고, 부채 대비 자산비율은 100.5% 예상

표 8 재정상태표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8년 말 기준 재정상태표	2030년 말 기준 재정상태표(전망)
자산	현재 자산	371.7	687.6
	미래 기여금	2,319.4	3,439.2
	총 자산(a)	2,691.1	4,126.9
계리적 부채(b)		2,674.4	4,107.1
자산 초과(부족)(=a-b)		16.7	19.7
부채 대비 자산 비율(=a/b)		100.6%	100.5%

주: 2016년 이후 기본 국민연금(Base CPP)에 대한 재정상태표  
 자료: 캐나다(2019), 「30th Actuarial Report Canada Pension Plan」

**다만,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캐나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조정 계획을 철화**

- 캐나다의 공적연금 재정상태가 개선되고 있고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자, 추진 예정이었던 연금개혁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개혁 역전 현상이 발생함
  - ▶ 연금개혁의 하나로 기초연금 및 보충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2023년 4월 1일부터 65세에서 2029년 1월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었음
  - ▶ 그러나 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할 경우 캐나다 노령인구의 대부분이 빈곤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2017년에 당시 캐나다 정부가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을 취소
  - ▶ 캐나다 이외에도 일부 국가에서 개혁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폴란드는 67세로 상향 조정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하향 조정

표 9 연금개혁 역전 사례

구분	내용
연금급여	스페인: 연금 재정의 상태에 근거하여 연금급여 수준이 연동되도록 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유예 한국: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A값의 5% 수준에서 25~30만원으로 상향 조정
수급개시연령	네덜란드: 퇴직연령과 기대수명 간의 연계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퇴직연령이 상향되지 않도록 함 캐나다: 기초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 체코: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 폴란드: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로 하향 조정

자료: OECD(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

캐나다 사례는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보험료 부담과 급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임을 보여줌

- 캐나다는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서 재정안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6년 연금개혁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 인상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었음



추계&세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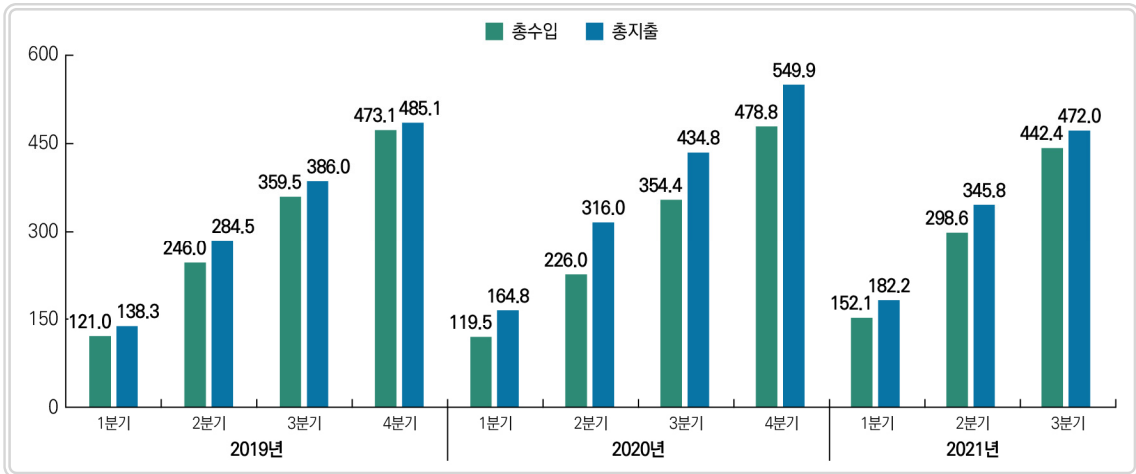
#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분기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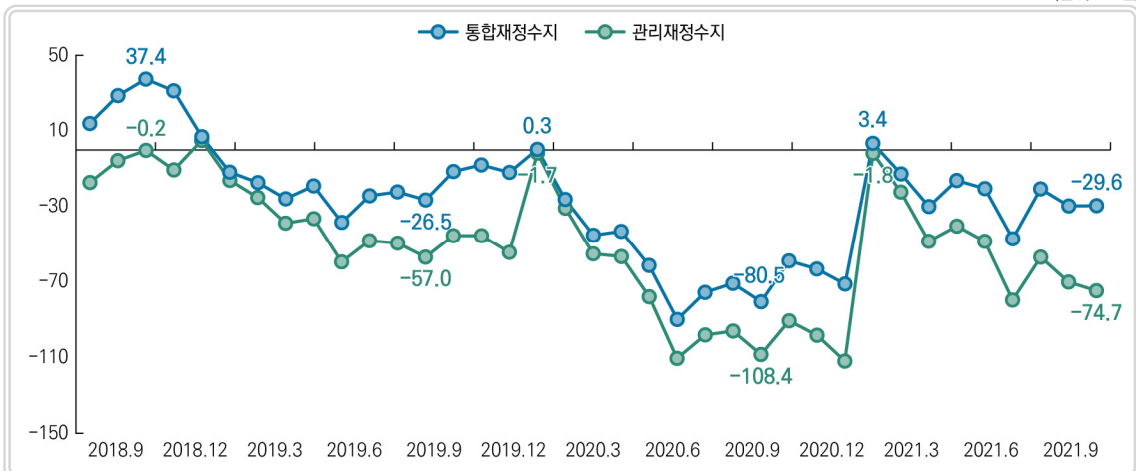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재정통계 - 재정총량 - 총수입·총지출 (www.nabostats.go.kr)

## 재정수지 추이(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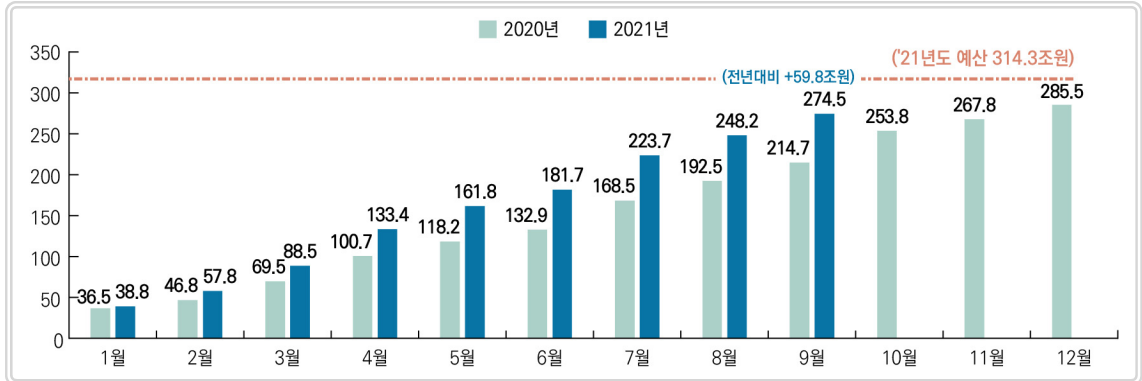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재정통계 - 재정총량 - 재정수지 (www.nabosta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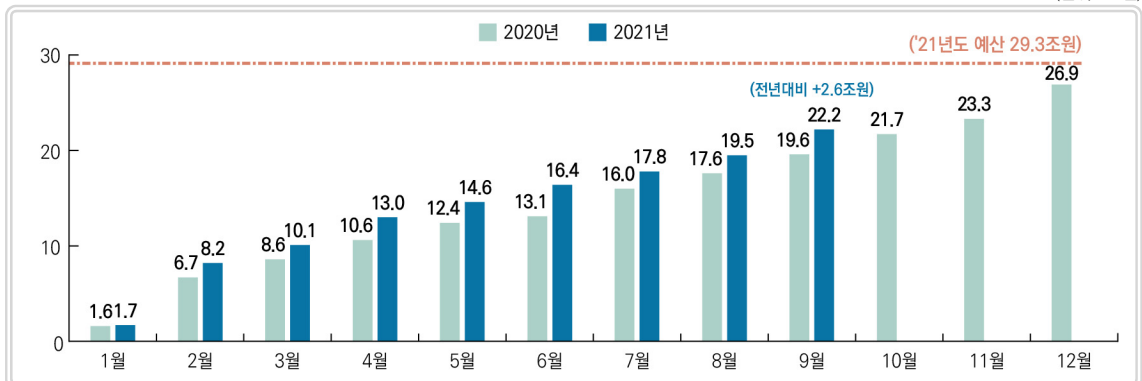
국세수입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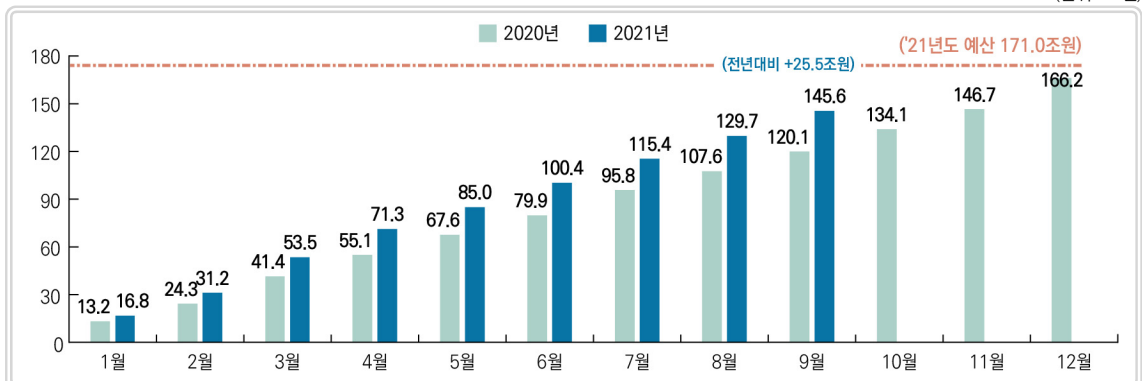
세외수입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기금수입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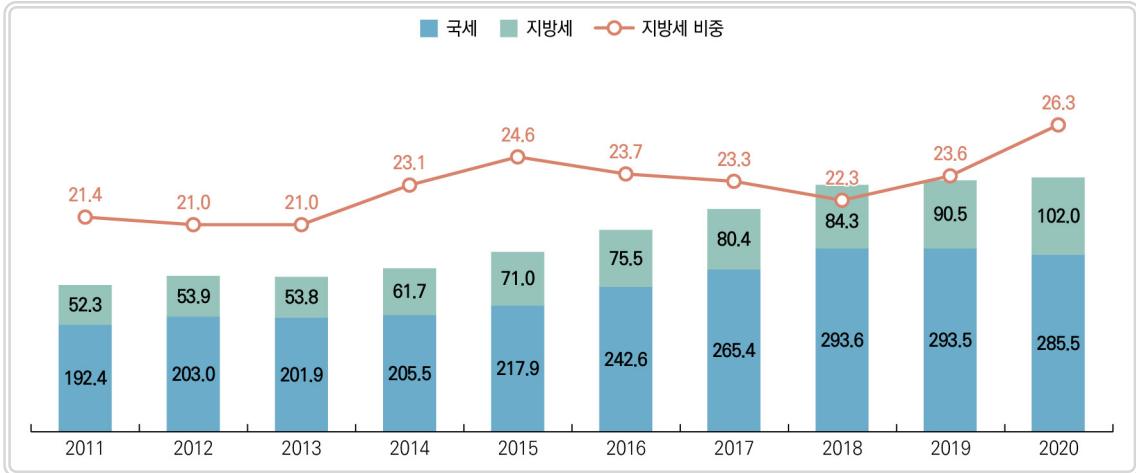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기초통계 - 진도율(월별 누계/전년동기대비) (www.nabostats.go.kr)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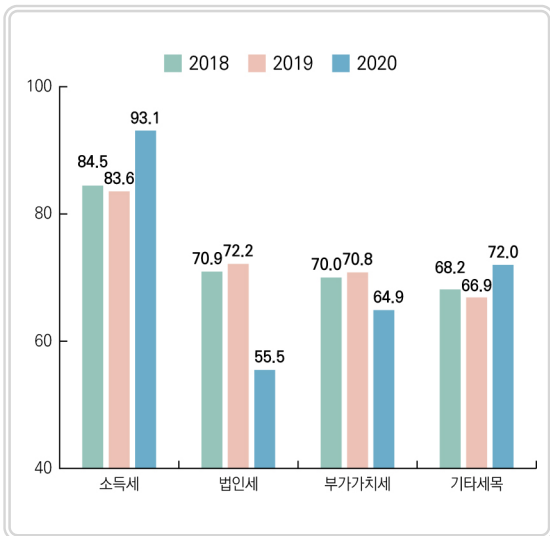
(단위: %)



주: 지방세 비중은 '지방세 / (국세 + 지방세) × 100' 으로 계산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국제비교 -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국세 주요세목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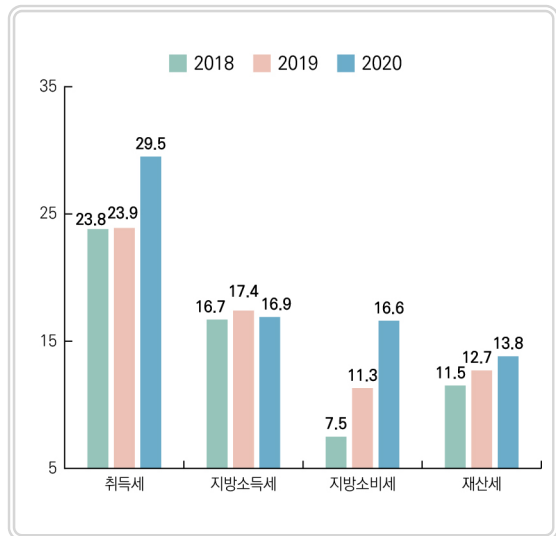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기초통계 - 국세수입실적(연간)

지방세 주요세목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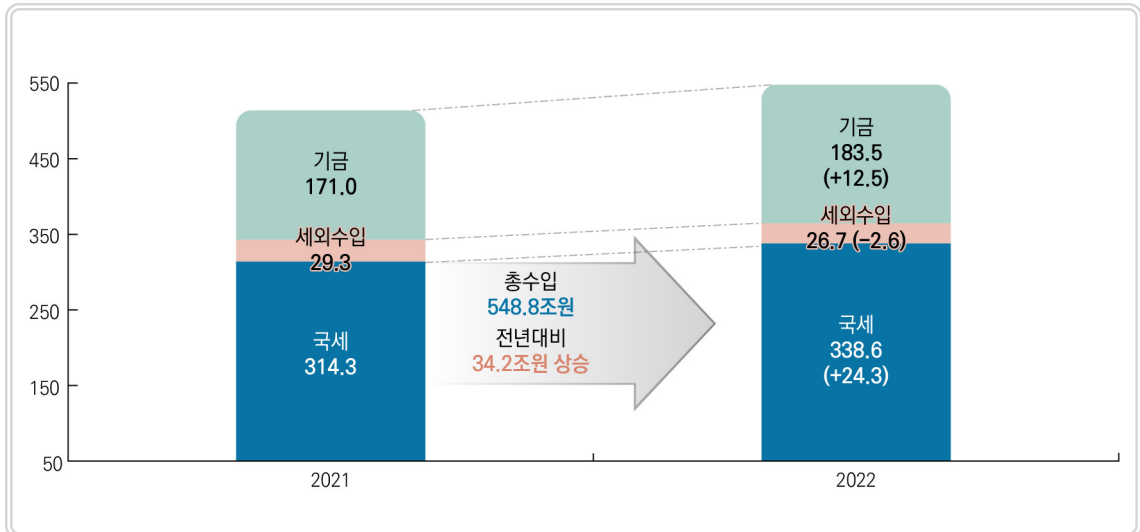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지방재정 - 지방세 수입 구조

### 2022년도 정부 총수입 예산안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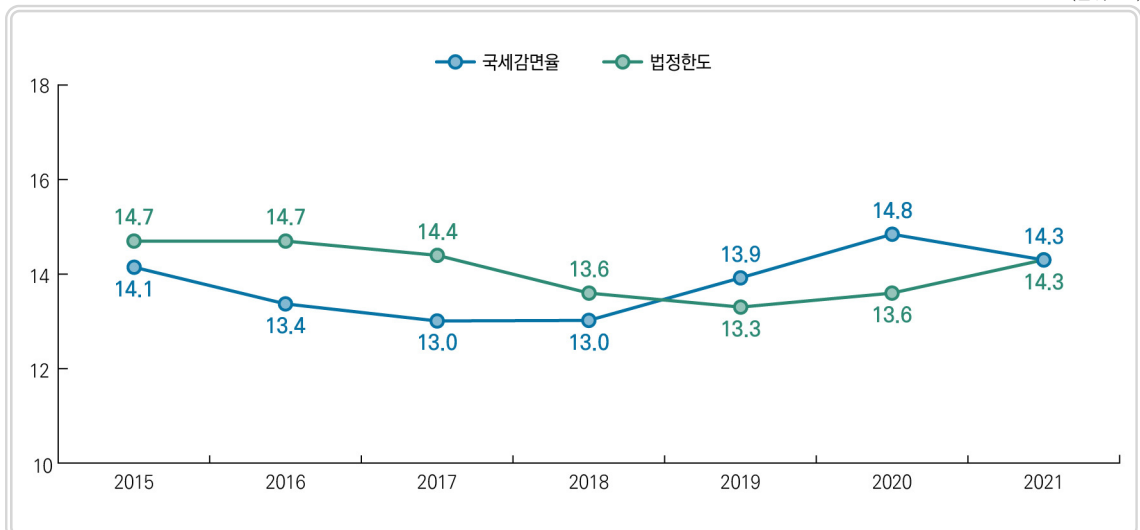


주: 2021년은 추경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2년도 예산안」

### 국세감면율

(단위: %)



주: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20.6.2.)에 따라 2019년부터 지방소비세 배분액 고려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naboo Cost Estimates & Tax Issues

## 추계&세제 이슈

---

발행일 2021년 11월 29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

ISSN 2733-8304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575-08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575-08

ISSN 2733-8304



국회에산정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